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

2022. 6.



문의처

- **공직윤리(PETI)시스템 접속 및 시스템 종합 문의** : 서비스데스크(1522-4273)
- **재산등록·공개 문의** : 소속 기관 감사부서 또는 인사혁신처(재산심사기획과)
- **재산심사 문의** : 소속 기관 감사부서 또는 인사혁신처(재산심사기획과)
- **주식백지신탁 문의** : 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발급 관련 문의** : 소속 기관 정보화담당부서
- **기타 사용문의 및 질의** : 재산신고 챗봇(카카오톡 및 공직윤리시스템),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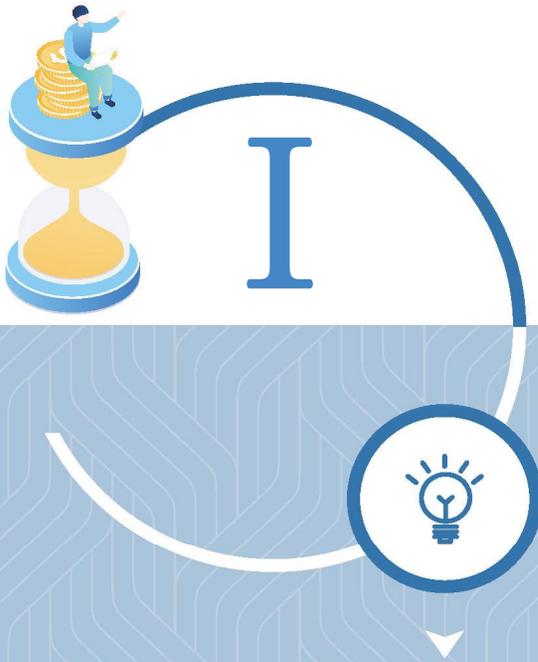
목차 Contents

I	최초 재산신고 개요	1
II	최초 재산신고 방법	11
	1. 본인정보 입력	15
	2. 친족정보 입력	15
	3. 총괄표 작성	18
	1. 부동산(토지, 건물)	18
	2.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27
	3. 현금(수표 포함)	28
	4. 예금(보험, 수익증권, 개인연금 등 포함)	28
	5.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29
	6. 증권(주식·국공채·회사채·백지신탁 등)	30
	7. 채권(사인간 채권)	34
	8. 채무(건물임대채무, 금융채무, 사인간 채무)	34

목차 Contents

9.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39
10.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39
11. 회원권	40
12. 지식재산권	40
13.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40
14.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41
4. 공개목록 작성(재산공개대상자에 한함)	43
5. 신고서 제출	44

Ⅲ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등록 방법	47
--	-----------



최초 재산신고 개요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I

최초 재산신고 개요

재산등록 신고

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는 등록기준일(신고기준일) 현재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신고)하여야 함(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

 재산등록의무자

-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영 제3조에 따라 **신규로 임명된** 정무직·일반직·별정직 공무원, 대학의 총·학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승진·전보 등으로 **최초 공개대상자가 된** 재산등록의무자
※ 정무직 등 고위공직자는 등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관보 또는 공보에 재산 공개(법§10)

 신고기준일(등록기준일)

- 재산등록의무 발생일(현직위 임명일, 공직유관단체 고시일 등)

 신고기간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단, 매달 1일 등록의무가 발생한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등록해야 함
 - 예) 7.1. 등록의무 발생 → 8.31.까지 제출 / 7.2. 등록의무 발생 → 9.30.까지 제출
 - (신고서 미제출)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미제출시 해임요구·징계의결요구 또는 과태료 부과**
 - ※ 개인별 신고기준일 및 제출기한은 PETI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등록대상 친족 및 재산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본인의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의 재산(공직자 윤리법 제4조 제1항)

※ (등록대상이 아닌 자) 혼인(법률혼)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계부모, 계자녀, 양부모,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등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및 지상권·전세권
- 자동차·선박,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보험 포함),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사인간 채권), 채무(금융채무, 건물임대채무, 사인간 채무)
- 그 밖에 금·백금, 보석류, 골동품·예술품, 회원권, 지식재산권 등

재산신고 방법 : 공직윤리(PETI)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 <http://www.peti.go.kr>,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SMS인증(주민번호 발급일자 포함)을 통한 로그인 가능

재산심사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하여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등에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함

유의사항

- **(신고기준일)** 재산등록의무 발생일의 재산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 작성일 당시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 **(등록대상 재산)** 실제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소유 재산이 아니더라도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된 재산** 또는 **사실상 소유 재산** 모두 신고
 - 해외에 있는 재산(예금, 부동산 등)도 빠짐없이 모두 신고
 - 소유한 부동산(토지·건물)은 실거래 가격(실제 매입한 가격)과 평가액(공시가격 등)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

- 재건축 분양권, 가족사이의 사인간 채권·채무 등도 모두 신고
- **공개대상자**는 특정재산항목*에 대하여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 기재
 - * ① 부동산 ② 비상장주식 ③ 사인간 채권·채무 ④ 합명·합자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⑤ 주식매수선택권
- **부동산 업무 관련 등록의무자**의 경우 **비공개 대상자**도 부동산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
- **(정보제공 및 활용)** 정보제공동의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토지 등 부동산 정보와 예금계좌별 잔액 등 금융정보를 재산등록 시 제공받을 수 있음
- 제공된 부동산·금융정보는 등록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본인 및 친족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히 신고해야 하며,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 신고기준일의 다음 달 15일 이내(단, 신고기준일이 매월 1월인 경우 그 달 15일)
 - ※ 제출된 동의서는 철회 전까지 계속해서 유효함

기타 관련제도

- **(고지거부) 직계존비속 중 독립생계·타인부양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 허가를 받아 해당 재산을 고지거부 할 수 있음
 - ※ 신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 **(주식백지신탁)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함
 - ※ 단,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청구하여 '관련없음' 결정받은 경우는 보유 가능

참고 1 고지거부 심사기준

○ 신청기간

- 신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허가사항으로 신청기간 엄수)

○ 신청방법

- 공직윤리시스템(PETI)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고지거부 신청 메뉴에서 신청

○ 고지거부 심사기준

대 상	심 사 기 준	
직 계 존 속	독립생계	•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허가
	타인부양	• 타인과 주소지가 같은 경우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타인의 소득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허가 • 타인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직계존속이 타인으로부터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금액을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이전받으면 허가
직 계 비 속	독립생계	• 독립생계 기준을 충족하고,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등록의무자(등록 의무자의 배우자 포함)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허가
	타인부양	•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하는 미성년 자녀는 이혼한 배우자나 양부모 등 자녀를 부양하는 타인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허가 가능

○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2022년)

(단위 : 천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도시지역	1,166	1,956	2,516	3,073	3,614	4,144	4,668
농촌지역	816	1,369	1,761	2,151	2,530	2,901	3,268

※ 주소지가 '읍, 면'이면 농촌, 그 외 도시지역 기준 적용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도시지역 524천원(농촌지역 367천원)씩 증가

- 농지구모별 농업소득

(단위 : 천원)

경지구모	0.5ha 미만	0.5~1.0ha 미만	1.0~1.5ha 미만	1.5~2.0ha 미만	2.0~3.0ha 미만	3.0~5.0ha 미만	5.0~7.0ha 미만	7.0~10.0ha 미만	10.0ha 이상
단위환산 (ha→㎡)	5천㎡ 미만	5천~1만㎡ 미만	1만~1만5천㎡ 미만	1만5천~2만㎡ 미만	2만~3만㎡ 미만	3만~5만㎡ 미만	5만~7만㎡ 미만	7만~10만㎡ 미만	10만㎡ 이상
월 소득	178	560	999	1,435	1,726	2,446	3,142	3,223	4,816

● 소득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예시)

일반소득	<p>※ 신고기준일 이전 1년 이상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농·축산업소득이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자경증명(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농지원부(농지대장), 출하증명(공제내역 기재) 등 <p><사업소득이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소득금액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 증빙서류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사업소득자용) 등 <p><근로소득이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증명서 및 소득금액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 증빙서류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소득확인서(재직기관) 등 ▶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p><연금소득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수급증명서(수령기간, 월 수령 금액 기재) 등 <p><금융소득이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장사본(정기적 이자소득이 드러나야 함) - 기타 금융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임대소득이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국세청), 통장사본(이체내역) 등
	<p>※ 직계존속만 해당</p> <p><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일 현재 부동산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p><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일 현재 금융자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액증명서, 유가증권잔고증명, 통장사본 등
	<p>기타</p> <p>관련 정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연락두절·행방불명, 이(재)혼 등 등록의무자가 부양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허가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사유서, 형제·친척의 진술(인우증명), 사실관계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법원판결문 등

※ 민원서류(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농지원부 등) 관련 인터넷사이트
- 정부24(<http://www.gov.kr>)

※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격 제공 인터넷사이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 고지거부 신청 유의사항 및 자주하는 질문

구분	유의사항 및 질문	답 변
유의 사항	① 고지거부 신청기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지거부 신청은 신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이후 신청은 불가능함
	② 고지거부 신청서 및 증빙서류 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지거부 신청시에는 고지거부 신청서와 독립생계 관련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기간내 미제출시 반려처리되거나 소득기준 불충족으로 불허될 수 있음
	③ 고지거부 신청서 서명 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지거부 신청서에는 등록의무자와 고지거부 대상자의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누락되거나 등록의무자가 본인의 것으로 대신하여 잘못 서명하는 경우 반려처리될 수 있음
	④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지거부를 신청한 후 고지거부가 허가될 것으로 보고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고지거부 신청이 불허되거나 반려될 경우 정보제공 없이 재산등록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 필요
자주 하는 질문	⑤ 부가가치세과세증명서, 카드매출내역 등을 소득금액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한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가가치세과세증명서, 카드사를 통한 수입증명 등은 소득증빙자료가 아니므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필요
	⑥ 소득기간/자녀 독립세대 구성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지거부 신청시에는 소득(재직)기간 및 자녀의 경우 별도세대 구성기간이 신고기준일 이전 1년 이상이어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 불허될 수 있음
	⑦ 임대중이거나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의 재산환산소득 산정 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존속의 부동산 재산의 소득환산시 동일건물에 대한 재산소득과 임대소득은 중복하여 합산이 불가하며, 고지거부 대상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재산소득으로 불인정함

참고 2 주식백지신탁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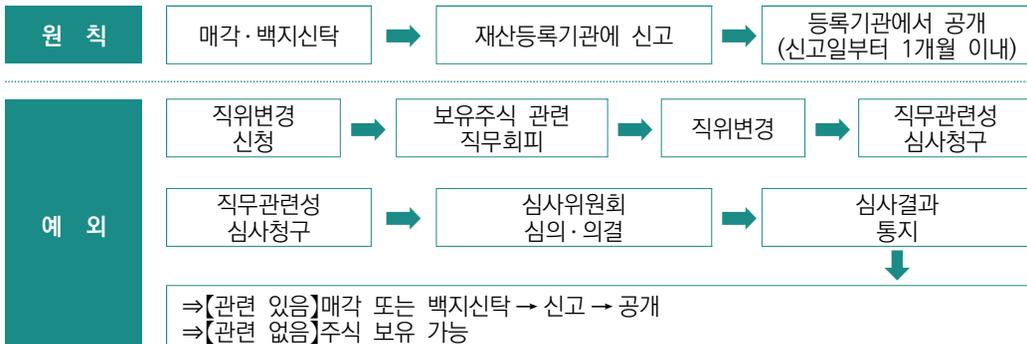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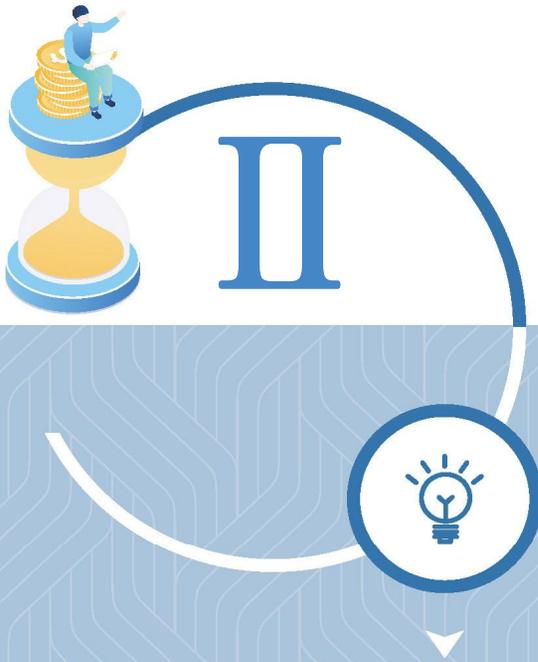
- **(제도개요)**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게 함
- **(대상자)** 재산공개대상자, 기획재정부 금융관련 국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 금융위원회 4급(상당) 이상 공무원
- **(대상주식)**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
 -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 없는 주식으로 고시'한 주식(펀드, 해외주식 등)은 가액에 상관없이 보유 가능하므로 3천만원 초과 여부 산정시 제외
- **(신고기준일)** 아래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 관련성 심사청구 조치

- ◆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 ◆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법 제6의3조 제1항 및 제2항)가 소멸된 날
- ◆ 공개대상자등의 직무가 변경된 날(예 : 행안위 소속의원이 국토교통위로 배정)
- ◆ 기존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여 3천만 원을 초과한 날 등

- **(의무위반시 제재)** 위반 정도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고,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

○ 운영절차





최초 재산신고 방법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II

최초 재산신고 방법

작성 순서	신고 항목	주요 신고 내용
1 본인정보 입력	- 소속, 직급, 직위, 주소, 연락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기준일 현재 상태로 입력
2 친족정보 입력	- 친족의 신상정보, 고지거부, 등록대상, 직업, 거주형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기준일 현재 친족정보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비속이 고지거부 대상이라도 우선 등록 후 고지거부 허가 신청 ※ 혼인(법률혼)한 딸, 사망한 직계존비속,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등록제외
3 총괄표 작성	- 부동산(토지·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액(공시지가, 공시가격 등)과 실거래가격(실제 매입한 금액) 중 높은 금액 등록, 둘 중 하나만 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 금액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액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활용 또는 부동산 소재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 • 타인건물에 대한 전세(임차)권은 건물항목에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참고, 임차보증금 기입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는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으로 등록
	- 광업권·어업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 등록, 둘 중 하나만 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 금액
	- 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예금(보험 포함)·유기증권·사인간 채권·채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자별 합계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신고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이 '+'이면 '예금' 항목에, '-'이면 '채무' 항목에 신고 • 투자신탁수익증권(펀드 등)은 예금항목에 신고 •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은 채무항목에 건물임대채무로 신고 • 가족 간의 채권·채무(대여)도 빠짐없이 신고

작성 순서	신고 항목	주요 신고 내용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자금용 예금계좌의 예금은 정치자금용 예금계좌에 신고 ※ 위 '예금' 항목에 중복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 금·백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보석·골동품 및 예술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목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회원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프, 헬스, 콘도미니엄 등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은 모두 신고 ※ 골프회원권은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 등록, 둘 중 하나만 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 금액 등록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登記되어 있어도 회원권으로 신고하고 '비고' 란에 면적 기재
	- 지식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 신고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자가액, 출자지분, 연간 매출액 등 기재
	-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연금액, 법인의 내역(명칭, 소재지 등) 등 기재
4 공개목록 작성	- 재산공개자만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작성에 주의 토지인 경우 지목(임야, 답 등)과 지번을 기재 건물인 경우 종류 및 용도(주택, 아파트, 상가 등)만 기재하고 지번과 동·호수 기재 생략
5 신고서 제출	- 재산신고 항목 최종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 확인 후 제출

1 본인정보 입력

등록의무자의 소속, 직위, 직급, 주소, 연락처 등을 **신고기준일(입명일 등) 현재의** 상태로 입력

- (주소) 자택 및 직장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신고
- (주소지에 대한 거주형태) 자가, 전세, 기숙사, 친척집 등을 선택

2 친족정보 입력

친족(등록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주소, 직업, 연락처 등을 **신고기준일(입명일 등) 현재의** 상태로 입력

- (주소 및 직업) 친족의 주소 및 직업은 재산의 증감액과 함께 재산흐름을 파악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상세하게 입력하여 향후 불필요한 소명 방지
- (주소지에 대한 거주형태) 자가, 전세, 기숙사, 친척집 등을 선택
 - 특히, 해외 거주 친족의 자가, 기숙사, 렌탈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거주지 정보를 수정하고 부동산 등록 시에도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친족의 범위) 배우자와 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친족은 혈족개념이 적용되며, 배우자(고지거부 불가능)의 재산은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등록
 - 자녀(장녀, 장남 등)와 손자녀(손자, 손녀)는 출생순서로 등록·신고
 - 조부모가 있는 경우 등록 제외되지 않도록 하되, 혼인(법률혼)한 딸은 자녀 순서는 유지하되 등록에서는 제외
 - 장녀(차녀)·장남(차남)의 용어는 성별을 구분하여 각각 순서를 정하여 신고

※ 자녀 신고방법(예시)

- ① '92년생 딸(장녀), '94년생 아들(장남), '97년생 딸(차녀), '98년생 딸(삼녀)이 있는 경우
⇒ 장녀 - 장남 - 차녀 - 삼녀 순으로 신고
- ② '92년생 딸(장녀, 혼인), '94년생 아들(장남), '97년생 딸(차녀)이 있는 경우
⇒ 장남 - 차녀 순으로 신고(혼인(법률혼)한 장녀는 등록에서 제외)
- ③ '05년생 아들(장남), '08년생 아들(차남), '09년생 딸(장녀)이 있는 경우
⇒ 장남 - 차남 - 장녀 순으로 신고

- (등록제외) 친족 중 사망한 사람, 혼인(법률혼)한 딸, 이혼한 배우자는 등록에서 제외
 - 사망한 친족의 재산은 신고기준일까지 상속(등기이전 등)이 안 된 경우에도 법정 상속지분만큼 신고하고 '비고'란에 해당상황을 상세히 기재
 - 혼인(법률혼)한 딸이 이혼하게 되면 친족으로 다시 등록(외손자녀는 등록하지 않음)
- (고지거부 확인) 친족의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상태, 고지거부 상태(허가기간, 허가여부)를 서로 비교·확인하여, 고지거부 허가를 받지 않은 친족의 재산은 반드시 신고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친족을 '고지거부자'로 상태변경 후 재산등록

주요 실수 사례

□ 친족재산 누락

① 배우자 재산 누락

- 배우자와 관계가 좋지 않아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함
 - ☞ 이 경우에도 정보제공 동의 혹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신고해야 함

②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장녀 재산 누락

-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장녀를 등록제외하고 신고하지 않음
 - ☞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딸은 등록대상이며, 딸의 소유재산을 신고해야 함

③ 문중재산, 동창회비 등 누락

- 형제 등 공동명의로 '문중재산', 본인 명의로 '친목(동창)회비' 등 예금계좌를 실제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신고 누락함
 - ☞ 실제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은 신고해야 하며, 회비, 문중재산 등은 비고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함

□ 친족(자녀 등) 등록 오류

① 자녀 등록 오류

- 자녀가 2남 1녀('95년생 아들, '00년생 딸, '02년생 아들)인 경우 출생순으로 장남, 차녀, 삼남으로 신고함
 - ☞ 자녀의 경우, 성별을 구분하여 각각 순서를 정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장남, 장녀, 차남으로 신고해야 함
- 1남 2녀('90년생 딸, '92년생 딸, '98년생 아들) 중 장녀가 혼인(법률혼)하여 등록제외하고 자녀를 장녀, 장남으로 신고함
 - ☞ 혼인(법률혼)한 딸(장녀)은 등록제외하는 것이 맞으나 자녀 순서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차녀, 장남으로 신고해야 함

② 조부모 미등록

- 조부모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고 상호 왕래가 거의 없어 신고하지 않음
 - ☞ 실질적인 부양여부 등에 관계없이 직계 존속은 등록대상이므로 신고해야 함

※ 본인 및 친족정보 관련 Q&A

질 문	답 변
① 재산의 신고기준일 및 신고기한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재산은 신고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해야 함 • 신고서 작성일의 재산으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② 재산을 등록해야하는 대상의 범위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함 • 혼인(법률혼)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계부모(새아버지, 새어머니), 계자녀 등은 등록대상 아님
②-1. 부부가 모두 재산등록의무자인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한쪽에만 신고해도 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가 모두 재산등록의무자인 경우에도, 각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함
②-2. 본인의 친자녀를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을 경우 친자녀의 재산을 등록해야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양육 주체에 관계없이 친자녀는 직계비속 이므로 재산을 등록해야함
②-3. 어린 손자녀의 경우, 재산이 없어도 등록을 해야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직계 비속은 모두 등록대상이므로 손자녀에 대해 별도 고지거부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출생부터 친족으로 추가하여 신고해야 함

3 총괄표 작성

유의사항

- 금융 및 부동산 정보는 등록의무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등록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제공하는 것으로 자동 입력되지 않으니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 후 신고 필요

제공되는 정보 (정보제공동의자에 한함)		제공되지 않는 정보	
토지	등기된 소유권	토지	지상권
건물	등기된 소유권	건물	전세(임차)권, 분양권
자동차	-	자동차	등록된 소유권
금융 자산	예금(보험, 수익증권, 개인연금 등), 증권(상장주식, 회사채, 금융채)	금융 자산	현금, 증권(비상장주식) 등
채무	금융채무	채무	건물임대채무, 사인간 채무
회원권	-	회원권	등기된 회원권

- 제공된 정보의 일괄입력(활용입력) 가능여부

- 금융(보험, 수익증권 등) : 일괄입력 가능 * 비상장주식·채권 등은 직접 입력 필요
- 부동산(토지, 건물) : 일괄입력 불가능(해당 주소 클릭 후 개별 입력 필요)

☞ 제공된 정보를 열람만 하고 입력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히 유의

1.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임차)권의 권리자(관계), 권리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 명세와 가액을 신고

공개대상자 및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비공개자 포함)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재산형성과정(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

- (취득일자)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간 채무 등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1) 소유권

- (소유권 판단)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신고
 - 매입 부동산 : 중도금 지급 이후 소유권으로 등록하고 가액은 계약금과 지급한 중도금을 합산하여 신고, '비고'란에 자금출처 등 사실관계 기재
 - 매도 부동산 : 매수인으로 등기가 이전되기 전까지는 본인의 소유권으로 등록하고 등기 이전 후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음
 - 등기 이전이 안 된 상속 받은 부동산 : '사실상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으로 신고하고 사실관계 기재
 - 미등기 부동산 : '비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기재
 - ※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제공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과세자료'와 대법원 등기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여 중복·누락 신고되지 않도록 유의
- (면적신고 방법)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건물항목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신고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분리하여 신고
 - (예) 대지 〇〇㎡, 건물 〇〇㎡)
 - 아파트 : 건물면적(전용면적)만 기재하고 대지면적은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상가, 빌딩, 오피스텔 :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는 건물은 연면적(전용+공용면적)을 기재
 - 공동소유 부동산 : 소유 지분만큼 신고(예) 〇〇㎡ 중 〇〇㎡)
 - ※ 토지정보는 국토교통부의 토지대장 자료와 대법원의 등기 자료가 제공되어 보여지므로 반드시 기준일자의 보유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 후 신고해야 함
 - (관리형태 기재) 소유권으로 신고한 건물은 '비고'란에 반드시 관리형태를 기재
 - (예) 등록의무자의 주소지, 〇〇〇에게 임대, 공실(빈집)로 관리 등
 - 유상임대한 부동산 : 임대계약서 상의 임대보증금을 건물임대채무 또는 토지임대채무로 신고
 - ※ 임대보증금은 '채무' 항목에 재산의 종류를 '건물임대채무' 또는 '토지임대채무'로 신고
 - (가액산정방법) 부동산의 가액은 평가액(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 지방세 시가표준액 등)과 실거래가격*(실제매입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등록하되, 둘 중 어느 하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등록하고 '비고'란에 해당상황을 기재
 - * 각종 포털 및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가 아닌, 실제로 취득한 가격 또는 보상액을 의미
 - 공동소유 부동산 : 소유 지분만큼만 신고

용어 정리

- **가액**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의 가치로, 평가액 또는 실거래가격을 의미함(전체 재산 총계에 반영되는 금액)
- **평가액** :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상 공시지가·공시가격 및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
- **실거래가격** : 실제 거래(매도·매입) 금액
※ KB시세 등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가 아님

부동산 평가액 산정방법

유형	평가액	확인방법
• 토지	개별공시지가	•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토지+건물 포함)	•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공동주택공시가격 (토지+건물 포함)	•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 공시가격이 있는 일부 상가·빌딩·오피스텔 (수도권,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국세청 기준시가 (토지+건물 포함)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 [주소 검색]
• 공시가격이 없는 건물 또는 건물만 보유한 경우	지방세 시가표준액 (건물 과세표준)	• “이택스” 홈페이지 (서울 소재)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 조회] • “위택스” 홈페이지 (서울 외 소재) : [전체메뉴]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유형	평가액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가격이 없는 건물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동일한 경우) 	개별공시지가 + 지방세 시가표준액 (건물 과세표준)	<p style="text-align: center;">< 개별공시지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p style="text-align: center;">< 지방세 시가표준액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택스” 홈페이지 (서울 소재)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 조회] • “위택스” 홈페이지 (서울 외 소재) : [전체메뉴]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

2) 전세(임차)권

- (신고대상)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거주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아파트·상가·오피스텔·토지 등
 - ※ 전세(임차)는 부동산 정보제공 대상이 아니므로, 등록의무자가 본인 및 친족의 전세(임차)권을 정확히 파악하여 빠짐없이 신고 필요
- (가액산정 및 작성방법) 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을 전세(임차)권 항목으로 신고
 - 월세 부동산 : 보증금 없이 월세만 지급하는 경우 등록재산이 아님
 - 공무원·군인 임대아파트, 관사 등 :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을 건물항목의 전세(임차)권 항목으로 신고

3) 분양권

- (일반 분양아파트) 신고기준일까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총 납입한 금액**을 **분양권**으로 신고하고 총 분양가액 별도로 기재
 - 다만, 신고기준일까지 계약금만 납부한 경우 신고대상 아님

- (재건축 분양아파트) 동·호수 배정 이전까지는 기존 건물을 계속 신고하되, 동·호수를 배정받은 이후에는 기존 건물은 ‘소유권 상실’ 처리한 다음 권리가액(=보상가액)과 부담금 등의 총 납입한 금액을 ‘건물’항목에 분양권으로 신고하고, 이주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채무’항목에 신고

※ 분양권을 매입(매도)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매도)가격으로 가액 신고

※ 분양권은 부동산 정보제공 대상이 아니므로, 등록의무자가 본인 및 친족의 분양권을 정확히 파악하여 빠짐없이 신고

□ 재건축 분양권 관련 용어 (예시)

(단위 : 천원)

권리가액	부담금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340,000	40,000	380,000	480,000

- ① 권리가액 :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 × 개발이익(비례율) (=보상가액, 지분금액, 자산가치)
- ② 부담금 : 착공 시 건설사에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 ③ 조합원 분양가 : 재건축 아파트 원소유자가 분양받을 경우 부담하는 금액
(권리가액) 조합원 분양가 : 추가 보상금 발생, 권리가액 < 조합원 분양가 : 부담금 발생
- ④ 이주비용 : 완공 때까지 조합원의 생활유지 등을 위해 빌려주는 자금

4) 기타

- (주택연금과 관련한 담보 주택) ‘부동산 소유권’으로 계속해서 신고하되, 신고기준일 시점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은 ‘채무’항목에 별도 신고
 ※ 농지연금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
- (신축 중인 건물) ‘사실상 소유권’으로 신고하되, 가액은 신고기준일 시점까지 소요된 건축비로 신고(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경우 함께 신고 필요)

주요 실수 사례

□ 부동산(토지 및 건물) 누락

- ①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해당항목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 ☞ 부동산 및 금융정보는 등록의무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신청에 의해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으며,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직접 입력해야 함
- ② 건물은 소유권만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전세권, 건물임대채무, 분양권 누락)
 - ☞ 부동산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모두의 전세(임차)권, 건물임대채무, 분양권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특히 소유권 외 건물임대채무, 전세(임차)권, 분양권 등은 부동산 및 금융정보가 조회되지 않으니 직접 확인 후 신고해야 함
- ③ 시골에 있는 부모님 소유 무허가건물을 등기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 누락함
 - ☞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일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함
 - ※ 정보제공동의자의 경우, 무허가 건물도 행안부 과세 자료로 확인 가능
- ④ 소유자가 동일한 건물과 토지를 토지와 건물에 분리하여 각각 신고하거나 건물은 누락하고 토지만 토지항목에만 신고함
 - ☞ 소유자가 동일하고 건물이 있는 토지는 건물항목에 토지면적, 건물면적을 각각 신고하고, 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하여 신고해야 함
- 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1·2차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분양권 가액을 계약금 금액으로 신고함
 - ☞ 아파트 분양권은 신고기준일까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총 납입한 금액을 분양권 가액으로 신고해야 함
- ⑥ 부모사망으로 형제 등과의 상속협약이 지연되고 있어 해당 재산을 누락함
 - ☞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을 신고해야 함

※ 부동산(토지, 건물) 항목 신고 관련 Q&A

질 문	답 변
① 최초 재산신고 부동산 가액 신고방법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액(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 등)과 실거래 가격(실제 매입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 - 둘 중 하나만 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 금액으로 신고
② 동일한 주소지 건물에 대해 부동산 정보가 2개 조회되는데 어떻게 등록(신고)해야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부동산 정보는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대법원, 행정안전부 등)별로 회신되므로 동일한 주소지 건물이 중복으로 조회될 수 있음 신고기준일(등록기준일) 현재 소유여부를 확인하시어 소유가 맞다면 정확하게 하나만 신고
③ 건물은 소유권만 등록(신고)하면 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의 소유권 뿐만 아니라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모두의 전세권, 건물임대채무, 분양권 등을 신고하여야 함 - 또한 소유권 외 건물임대채무, 전세권, 분양권 등은 부동산 및 금융정보가 조회되지 않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은 직접 확인 후 신고해야 함
④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매도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중도금을 받은 상태이며, 이사가 갈 주택을 매수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인데, 주고받은 금액이 동일하여 전체재산의 증감은 없는 상태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한 경우, 등기가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는 본인 소유권으로 신고하고 비교란에 현재 상황(계약관계, 금액 등)을 기재하면 됨 - 또한 신규 주택을 매수한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했다면 소유권으로 신고하고 비교란에 현재 상황(계약관계, 금액 등)을 기재하면 됨
⑤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재산신고 방법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는 토지 항목에 건물은 건물 항목에 별도로 신고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건물 항목에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함
⑦ 등기사항증명서상 부동산의 명의인이나 실제 타인 재산(예:문중재산)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부동산을 재산으로 신고하고 실제 사실관계를 '비고'란에 기재함
⑧ 직계존속 사망 등으로 상속될 부동산이나 명의 이전이 안 된 경우 신고방법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의 경우 사망 시점에 소유권이 당연히 이전되므로, 상속받지 않을 예정이더라도 등기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법정 상속지분 또는 협의된 지분을 소유권으로 신고하고 '비고'란에 해당상황 기재

질 문	답 변
<p>⑨ 공동명의 부동산 신고방법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명의 소유 부동산인 경우 재산등록대상자가 각각 소유한 지분만큼 면적 및 가액 등을 신고해야 함 ※(예시) 본인 건물 100㎡ 중 50㎡, 배우자 건물 100㎡ 중 50㎡
<p>⑩ 배우자와 공동명으로 아파트를 구매하였는데 동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어 전세보증금을 끼고 구매한 경우, 재산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명의인 아파트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지분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함 - 해당 아파트를 타인에게 전세를 주고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본인과 배우자 각각 소유 지분만큼 채무항목에 '건물임대채무'로 각각 신고하여야 함 ※ 예) 전세보증금 8억원이 있는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입한 경우 : 아파트 소유권을 본인, 배우자명의로 지분만큼 각각 신고(각각 5억원)하고 전세보증금은 채무항목에 건물임대채무로 지분만큼 각각(각각 4억원) 신고
<p>⑪ 등록의무자 본인이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은 어떻게 등록(신고)해야 하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 소유지분만큼의 면적과 가액을 신고해야 함. 이때 공동 소유한 사람이 재산등록대상자인 경우(ex. 배우자) 에는 해당 소유자의 지분도 신고해야 하나, 재산등록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인 본인의 보유지분만 신고해야 함
<p>⑫ 건물 임대(빌려줌) 또는 임차(빌림) 시 재산신고 방법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건물 항목에 입력, 임대 후 받은 보증금은 채무항목에 "건물임대채무"로 신고함 • (임차) 건물에 대한 전세(임차)권을 건물 항목에 "전세(임차)권"으로 입력, 이때 지불한 임차 보증금을 재산 가액으로 신고함
<p>⑬ 건물 임차 시 보증금 일부를 납부하고 월세를 매달 지급하는 이른바 '반전세'의 경우 재산 신고방법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항목에 전세(임차)권으로 보증금만 별도로 신고함 ※ (예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원룸 임차 ⇒ 보증금 1천만원만 전세(임차)권으로 신고, '비고' 란에 월세금을 기재 • 보증금 없이 월세만 지급하는 경우 신고대상 아님
<p>⑭ 신고기준일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하고 신고기준일 이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어떻게 등록(신고)하여야 하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신고재산은 신고기준일 현재의 재산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기준일까지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에는 전세(임차)권을 신고하지 않음.(계약금을 타인에게 차용한 경우라면 사인간채무 항목에 해당 금액을 신고하여야 함)

질 문	답 변
<p>⑮ 아파트 등 신규 분양 시 분양권의 신고방법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만 납부한 경우) 신고대상 아님 •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건물 항목(분양권)에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분을 합산하여 가액으로 신고하고 총분양가액을 별도로 기재
<p>⑯ 분양받은 아파트의 옵션비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분양가 기재시 옵션금액이 있다면 포함하여 기재하고 '비고'란에 총 분양가액과 옵션가액을 상세히 기재
<p>⑰ 재개발 분양권을 신규로 등록(신고)하려고 하는데 주소지가 검색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중인 아파트 등 주소지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주소창 옆 '기타(국외 등)'를 선택하여 직접 해당 주소를 입력하고 이후 완공되면 정확한 주소로 변경('비고'란에 해당 상황 기재)
<p>⑱ 프리미엄 5,000만원을 포함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 실제 매입한 금액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총 분양가액과 프리미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비고'란에 해당 상황 기재)

2.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권리종류, 제작연도, 배기량, 등록번호 등 권리 명세와 가액을 신고

1)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 (자동차 가액산정방법) 신고기준일 현재의 자동차보험 상 차량기준가액, 지방세 시가표준액, 실거래가격 순으로 등록
 - ※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 자동차 가액 신고 후 할부 잔액은 채무 항목에 신고
 - ※ 배기량이 없는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등)의 경우 배기량에 0cc로 기재하고, 자동차 가액은 구입 시 보조금을 포함한 실거래가로 신고(비고란에 해당 사항 기재)
- 사업상 또는 직위상 실제 본인 소유가 아닌 자동차도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신고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 기재

□ 리스자동차 신고방법

- **운용리스** : 리스 계약 종료 후 법인 등에 반납 (≒렌터카)
 - 리스 보증금은 채권란에, 리스 잔여대금(월납부액×잔여기간)은 채무(금융채무)란에 신고
 - ※ 장기렌터카는 보증금을 채권란에 신고하되, 렌터비·선납금은 신고하지 않음
- **금융리스** : 리스 계약 종료 후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 (≒할부구매)
 - 리스차량의 보험기준 가액은 채권란에, 리스 잔여대금(월납부액×잔여기간)은 채무(금융채무)란에 신고하되, 채권의 '비고'란에 리스 관련 사실관계 기재
 - ※ 잔여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자동차 항목으로 변경 신고

- (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가액산정방법) 평가액(지방세 시가표준액, 전문가 평가액 등)으로 등록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등록

주요 실수 사례

□ 자동차 누락 및 과다 신고

- ① 배우자와 공동소유(본인99%,배우자1%)인 경우, 배우자의 지분은 신고하지 않고 의무자 본인 지분 100%로 신고함
 - ☞ 자동차 등록원부 상 공동소유일 경우, 대상자별 해당 지분만큼 각각 신고해야 함 (의무자 99%, 배우자 1%)
- ② 자동차 소유권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누락
 - ☞ 자동차 소유권 정보는 사전에 제공되지 않으니, 정보제공동의자의 경우에도 소유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해야 함

2)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등

- (권리의 명세)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
- (가액산정방법) 평가액(지방세 시가표준액, 전문가 평가액 등)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가액을 등록하되, 둘 중 어느 하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등록

3. 현금(수표 포함)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신고기준) 보유하고 있는 지폐 및 자기앞수표의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당좌수표 등 일반 수표는 '채권', '채무' 항목에 신고)
※ 보관방법(금고, 옷장 등), 보관사유, 용도, 자금출처 등 기재

4. 예금(보험, 수익증권, 개인연금 등 포함)

※ 금융정보활용입력 기능활용

소유자별 예금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모든 예금의 종류, 계좌번호, 보유액 등을 신고

- (소유자 판단) 실제 본인 재산은 아니나 본인 명의의 동창회비(친목회비), 문중재산 등도 예금의 성격을 불문하고 예금주 기준으로 등록 후 '특기사항' 란에 사실관계 기재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별도 항목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예금' 항목에 해당 예금계좌를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 (예금의 종류)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적립보험료가 0원인 보험 신고 제외), 수익증권(펀드 등), 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도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예금에 포함
※ 금융기관에서 회신되지 않은 해외계좌, 기타 금융권 계좌, 봉급에서 자동 이체되는 지방행정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도 '예금' 항목에 반드시 신고
※ 보험약관대출은 '채무' 항목에 신고

- (보험) 100% 보장성 보험(적립보험료가 0원인 보험, 예) 자동차 보험, 여행자 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을 계약자 명의로 신고하고, 가액은 납입 보험료 총액으로 신고
 - ※ 지급개시되어 연금을 수령하고 있더라도, 가액은 납입금액 총액으로 신고하고 비교란에 해당 상황을 기재하여야 함
 - (예시) 총 납입금액 00원, 2021.1월부터 월50만원씩 수령 중
 - ※ 예상 해지환급금, 만기환급금 등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 (연금) 개인이 가입한 연금은 모두 등록대상이나,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은 등록대상 재산 아님
- (마이너스 통장) 신고기준일 잔액이 0이면 '예금', 0이면 '채무' 항목에 신고
- (펀드 등 수익증권) 신고기준일 현재의 '예금액'이 아닌 '평가액'으로 신고

사모펀드의 경우 '예탁기관'란에 '자산운용사', '예금종류'란에 '펀드명', '특기사항'란에 '사모펀드유형'(예 : 전문투자형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을 기재

◆ 계좌번호가 없는 사모펀드의 경우 '계좌번호'란에 '-' 기재

- (부동산 신탁재산) 신탁등기 이전까지는 '건물' 항목에 종전 부동산을 신고, 신탁등기 이후인 경우에는 '건물' 항목에 신고하지 않고 신탁회사의 평가금액을 '예금'(부동산 신탁회사 회신금액)항목으로 신고

5.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을 신고

- (예금의 종류) 일반예금과 마찬가지로 보통예금, 정기예금, CD, 보험, 수익증권(펀드 등), 투자자예탁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
- (보유액 산정 및 신고방법) 신고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등록하고, '비고'란에 해당 계좌가 수입용인지 지출용인지 기입

6. 증권(주식·국공채·회사채·백지신탁 등)

※ 금융정보활용입력 기능활용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모든 증권의 종류(주식, 국채 등), 발행인(종목명), 종목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반드시 기재), 수량, 가액 등을 신고

- (증권의 종류) 주식(국내·외 상장주식, 국내·외 비상장주식), 채권(국채·지방채·특수채·금융채·회사채 등),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을 모두 등록

금융정보활용입력 기능은 상장주식만 적용되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채권 등은 직접 입력 필요**

※ 주식백지신탁 또는 매각 대상은 등록의무자가 재산 공개대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임 (재산신고 금액기준과 주식백지신탁 금액기준이 다름)

* (재산 공개대상자등) 재산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의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증권회사에 위탁하여 증권회사가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랩상품 등) 신고기준일 현재 개별주식을 신고('비고'란에 '랩상품' 표시)

※ 예금항목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공개대상자의 경우 기타 비상장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재산형성과정**(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

- (취득일자) 거래계약일, 주주명부 등재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등
-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간 채무 등 해당증권을 취득한 자금 출처
- (기 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 (유가증권) 국채·공채·회사채 등은 '액면가'로 신고
- (상장주식)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신고기준일 최종거래가격'으로 신고
- (비상장주식)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거래량 가중 평균가'로 등록하고, 기타 비상장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등록
- 상장폐지, 폐업중인 법인의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이 청산되기 전까지는 신고 하여야 하며, 법인의 청산여부와 액면가는 대법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가능)로 확인할 수 있음

- 상장폐지, 폐업 등으로 해당 기업의 재무정보 취득이 어려운 경우, 소명자료(정보제공 요청일 및 방법, 거부사유 등)를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할 수 있음

◆ **한국장외시장(K-OTC)** : 종전 프리보드시장을 확대·개편한 시장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주뿐만 아니라 비상장 유명 대기업주도 거래되고 있으며, 홈페이지(<http://k-otc.or.kr>)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량 가중 평균가' 확인 가능

• **(주식매수선택권)** 보유 중인 스톡옵션도 신고대상이며, 받을 주식의 종류, 행사조건, 현재시가 등 입력

-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 가격·기간 등 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기재

• **(매각 또는 백지신탁)**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액'란에 매각금액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금액을 입력하고, '비고'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여부를 기재

※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 그 신탁재산은 이후 변동신고 대상에서 제외

주요 실수 사례

□ **예금, 증권 누락**

- ① 금융정보가 사전에 제공 되었으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만 제출하면 자동 입력되는 것으로 알고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누락함
 -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으며, 제공된 금융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신고해야 함
- ② '예금'만 금융정보활용 입력을 하고 '증권', '금융채무'는 활용입력을 하지 않아 누락됨
 - ☞ 제공된 금융정보는 열람만 하면 자동 입력되지 않으며, 금융정보활용입력 기능을 활용하여 입력하되 '예금', '증권', '금융채무' 각각 활용입력 버튼을 클릭해야 함
- ③ 금융채무, 소액 예금은 신고대상 재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누락함
 - ☞ 소유자별 1천만원 미만을 계좌별 1천만원 미만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금융채무, 사인간 채무를 합산하여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임
- ④ 신고서 작성일 현재 금융채무를 변제하여 금융채무를 '0'으로 신고함
 - ☞ 신고서 작성일 현재에는 변제하였지만, 신고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신고서 작성 시점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
- ⑤ 해약한 예금·보험 등을 현 가액만 '0'으로 신고함
 - ☞ 예금·보험 등을 해약한 경우 '해약'에 체크(✓)하고 가액 적정여부('0'원)를 반드시 확인하여 신고해야 함
- ⑥ 증권항목에 '환매조건부 채권'이 회신되었으나, '금융정보 활용입력'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신고된 것으로 알고 누락함
 - ☞ 회사채, 금융채 등 채권은 '금융정보 활용입력'이 되지 않으므로 회신된 정보를 참고하여 직접 신고해야 함

참고 3 기타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방법

○ 기본방향

※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진단하기** 버튼을 활용하여 가액의 유형 결정

- (실거래가격) 매매가 있고 실거래가격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평가액) 매매가 없거나 실거래가격의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 (액면가) ① 실거래가격 또는 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1주당 순자산가치로 신고하는 경우 제외), ② 평가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 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동일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일한 가액으로 신고

○ 실거래가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거래가격으로 인정

- ① (거래시기) 재산등록 기준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매도 또는 매입)
 - ※ 해당 기간 중 둘 이상의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매매를 말함
- ② (거래상대방)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단, 재산등록사항을 고지거부한 사람 제외) 상호 간이 아닌 제3자와 매매거래
- ③ (거래규모) 매매한 주식의 총수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매매일 기준)의 1% 또는 매매한 주식의 합계액(액면가 기준)이 3억원 이상
 -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액면가는 주식발행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④ (입증가능성) 매매로 인해 납부 의무가 발생한 국세 신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어야 함
 - *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등

• 다만, 실거래가격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로 신고

○ **평가액** ※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계산하기** 버튼을 활용하여 1주당 평가액 계산

• 실거래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다음 ①~③ 중 가장 높은 금액 신고

- ①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 × 3/5) + (1주당 순자산가치 × 2/5)
- ② 1주당 순자산가치 × 4/5
- ③ 1주당 액면가

☞ 1주당 액면가, 자산총액, 부채총액,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발행주식총수 정보 입력시 자동계산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① ÷ 이자율(10%)^② ① 신고기준일 기준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1주당 당기순이익*을 최근 사업연도 순으로 각각 3 : 2 : 1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 * 각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함)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이자율
1주당 순자산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발행주식총수** ※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 * 신고기준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상 금액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총수

- 해당 주식이 다음 ①~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로 신고
 - ① 재산등록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 ②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 ☞ 해당사항 체크 후 자산총액, 부채총액, 발행주식총수 정보 입력시 자동계산
- 단, 기업이 회계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평가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
 - * 기업에 정보제공을 요청한 일자·방법 등 요청 내역, 제출 거부사유 등 소명

○ 최종가액유형에 따른 구비서류

최종가액유형	구비서류
실거래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 과세신고자료(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평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업에서 기업정보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 재무제표 또는 기업정보확인서 • 해당 기업에서 기업정보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재무제표
액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업에서 기업정보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관련 소명자료 • 실거래가격으로 결정되었으나 액면가가 더 높은 경우 → 국세 과세신고자료 • 평가액으로 결정되었으나 액면가가 더 높은 경우 → 재무제표 또는 기업정보확인서

7. 채권(사인간 채권)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모든 채권을 신고

- (신고방법) 채무자명, 채무자 주소(전화번호), 채무자와의 관계 등 상세정보를 기입
 - ※ 전세(임차)보증금은 채권 항목이 아닌 ‘부동산(건물)’ 항목에 기입
 - ※ 사인간 채권·채무(부모-자녀간 포함)는 비조형성 재산으로 누락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산 항목이므로 차용증, 원금·이자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히 신고(증빙자료 첨부 가능)

공개대상자의 경우 사인간 채권에 대한 **재산형성과정**(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

- (취득일자) 계좌이체일, 차용증상 대여일 등
- (취득경위) 채무자와의 관계, 발생사유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등 해당 채권의 자금 출처
- (기 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8. 채무(건물임대채무, 금융채무, 사인간 채무)

※ 금융정보활용입력 기능활용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무(금융채무, 사인간 채무, 건물·토지 임대 채무 등)를 신고

- (금융채무)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 채무(대출, 약관대출, 미수금, 카드론 등)는 ‘금융정보활용입력’ 기능을 이용해 신고하고, 채무의 사용처를 기재
 - 예) 등록의무자 본인이 2천만원 금융대출 후 지인에게 빌려준 경우 : 등록의무자는 [금융채무] 2천만원, [사인간 채권] 2천만원 신고
 - ※ 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및 할부 물품구입비는 금융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사인간 채무) 발생사유·일자, 채권자와의 관계, 사용처, 이자율 등을 상세하게 기재
 - (가족 간 채무) 부모-자녀 등 가족 사이에 발생한 채권·채무도 사인간 채권·채무로 등록
 - 예) 배우자가 2천만원 금융대출 후 자녀에게 빌려준 경우 : 배우자는 [금융채무] 2천만원, [사인간 채권] 2천만원 신고, 자녀는 [사인간 채무] 2천만원 신고
 - ※ 전체 재산에 변동이 없어서 가족간 채권·채무를 신고하지 않거나, 어느 한쪽만 신고 (예 : 부모만 신고, 자녀는 누락) 하지 않도록 유의

공개대상자의 경우 사인간 채무에 대한 **재산형성과정**(취득일자·취득경위 등)을 반드시 기재

- (취득일자) 계좌이체일, 차용일 등
- (취득경위)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의 사용목적 등
- (기 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 (건물임대채무)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월세(임대)보증금은 ‘건물임대채무’로 신고
- (선거를 위한 채무) 선거자금을 위해 다수의 사람과 설정한 채무(일명 ‘선거펀드’)의 경우 채권자는 대표 1인 외 00명으로 입력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 기재

예) [채권자] 김○○외 2,300명, [비고] 6.13. 지방선거 선거펀드

주요 실수 사례

□ 채권, 채무 누락

- ① 부모와 자식사이에 주고받은 전세보증금, 사업자금 등은 전체 재산규모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음
 - ☞ 본인의 자금을 자녀에게 지원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은 사인간 채권으로, 자녀는 사인간 채무로 신고해야 함(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
 - ※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증빙자료 첨부
- ② 임대 중인 건물의 보증금은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지하여 누락함
 - ☞ 건물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 등은 신고 대상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함
- ③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거주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부동산의 전세(임차)권을 건물 항목과 사인간 채권으로 중복 신고함
 - ☞ 전세(임차)권은 채권이 아닌 건물항목의 전세(임차)권으로 신고해야 함
- ④ 친족의 건물을 무상으로 임차 또는 임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전세(임차)권이나 건물임대 채무를 주변 시세로 신고함
 - ☞ 친족에게 무상으로 임차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비고’란에 관리형태에 대해 상세히 기재하면 됨

※ 예금, 증권, 채무항목 신고 관련 Q&A

질 문	답 변
<p>①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하는데, 그 의미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개개인별로 판단, 예금·증권·채무 각각의 항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임 ※ 사례 예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 예금 합계액 7백만원, 배우자 예금 합계액 3백만원인 경우 ⇒ 등록의무 없음 2. 본인 예금 합계액 3백만원, 본인 증권 합계액 7백만원 ⇒ 등록의무 없음 3. 자녀 1인의 예금(6개 계좌) 합계액 12백만원 ⇒ 등록대상임 • 계좌별 1천만원 이상인 예금, 증권, 금융채무만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함
<p>② 예금 등의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 증권, 채무 등 각각의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대상 아님 • 다만, 1천만원 미만으로 간주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나 실제 1천만원 이상 소유하여 처분 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필요
<p>③ 예금계좌를 등록(신고)하려고 하는데 해당 예탁기관이 검색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탁기관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 ‘기타’로 검색하여 해당하는 기관을 선택하고 예탁기관명을 직접 입력
<p>④ 부동산 신탁재산의 등록(신고) 방법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등기 이전까지는 ‘건물’ 항목에 종전 부동산을 신고, 신탁등기 이후에는 종전 부동산은 ‘소유권 상실’ 처리하고 신탁회사의 평가금액을 ‘예금’(부동산 신탁회사 회신금액)항목으로 신고
<p>⑤ 소유한 부동산이 신탁회사로 등기 이전된 경우 등록(신고) 방법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신탁회사로 부동산 등기가 이전된 부동산은 건물항목에 신고하지 않고, 신탁회사에서 회신한 금액을 예금항목에 신고
<p>⑥ 실제 본인 재산은 아니나 사업 등 목적으로 본인 명의 예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등 재산은 실제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하고 사실관계를 ‘비고’ 란에 기재함

질 문	답 변
⑦ ETF, ETN, MMF, ELS, IRP의 등록(신고) 방법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정기, 자유 등 모든 예적금, DB, DC, IRP 등 퇴직연금, ETF, ETN, MMF, FX 등은 예금항목에 신고하여야 함
⑧ 증권계좌의 예탁금 및 간접금융상품 신고방법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계좌의 예탁금은 증권 구매를 위한 예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증권 항목이 아닌 예금 항목에 신고함 • 증권회사의 간접금융상품(MMF, ELS, 수익증권 등)도 예금 항목에 신고함
⑨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상장주식을 매수한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주식은 증권항목에 신고기준일 최종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대출받은 금액은 채무항목에 금융채무로 신고
⑩ 해당 주식계좌에 미수금이 있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거래시 발생한 미수금은 채무항목에 금융채무로 신고
⑪ 해외주식은 금융정보열람에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보열람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재산등록 참고용 자료이며, 금융정보열람에 보이지 않는 해외주식이라도 신고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하고, 가액은 신고기준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기재
⑫ 오래전에 상장폐지된 주식도 신고해야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 폐지된 기타 비상장주식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청산이나 파산되기 전까지는 신고해야 함 • 법인의 청산여부와 액면가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법인의 등기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기타비상장주식 신고방법에 따라 평가액 등으로 신고 • 참고로 법인등록번호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DART),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명으로 검색하여 확인
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등록(신고) 방법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 중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도 신고대상이며, 받을 주식의 종류, 행사조건, 현재시가 등을 기재하여야 함 •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가격·기간 등 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기재

질 문	답 변
<p>⑭ 배우자가 다니는 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하고 있어 증권항목에 신고하였는데 해당 금액이 총괄표 총액에 반영이 되지 않는데 오류인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매수선택권은 신고기준일 현재 실현되지 않은 권리로 재산항목으로 신고는 하지만 총괄표의 총 재산액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은 증권항목에 신고는 하되 총계에는 반영되지 않으니 오류가 아님 • 참고로 주식매수선택권, 지식재산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총액에 합산되지 않음
<p>⑮ 매각 또는 백지신탁한 주식의 신고 방법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액'란에 매각금액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금액을 입력하고, '비고'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여부를 기재 ※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 그 신탁재산은 이후 변동신고대상에서 제외
<p>⑯ 금융정보활용입력을 통한 예금, 증권, 금융채무의 신고방법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신고기준일 현재 본인이 소유한 금융계좌의 잔액 현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 받아 이를 활용하여 신고 가능
<p>⑰ 실제 본인이 소유한 계좌의 잔액과 금융기관이 회신해준 정보가 상이한 경우 신고방법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자가 직접 확인한 잔액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재산을 신고해야함 ※ 금융기관이 회신해준 자료는 참고용으로서 사실관계의 확인 및 최종 책임은 등록의무자에게 있음
<p>⑱ 회신된 금융 정보 외 추가적인 금융재산을 소유 중인 경우 신고방법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보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 등' 으로부터 회신되고 있으므로 해외은행 등의 금융정보는 회신되지 않음 • 미회신 금융정보의 경우 등록의무자가 추가로 해당 재산을 등록해야함
<p>⑲ 보장성 보험도 신고대상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립보험료가 있는 모든 보험은 신고대상 • 자동차 보험 등 보장보험료만으로 구성된 보험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신고제외 : 자동차 보험 등 '적립보험료 0원' 상품
<p>⑳ 등록의무자의 보험을 고지거부한 모친(어머니)이 계약한 경우 신고 방법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를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고지거부 대상자인 모친이 계약자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됨

질 문	답 변
㉑ 마이너스 통장의 신고방법은?	• 신고기준일 현재 통장의 잔액이 (-) 인 경우 금융채무로 신고하고, (+) 인 경우 예금으로 신고함(한도액을 신고하는 것이 아님)
㉒ 부모-자녀간 등 등록대상 내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도 신고해야 하는지?	• 자녀의 통학 편의 등을 위해 원룸 보증금을 대여한 경우, 자녀의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등 부모-자녀간 발생한 사인간 채권·채무도 신고해야 함
㉓ 채무(건물임대채무, 금융채무, 사인간 채무)의 신고 대상은?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무(금융채무, 사인간 채무, 건물·토지 임대 채무 등)를 신고하고, 채무액 변동 시 그 사유, 자금흐름 등을 반드시 기재
㉔ 등록의무자인 본인의 배우자와 장모가 공동소유 중인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은 장모가 모두 관리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의 경우 소유한 지분만큼 소유권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배우자 소유지분 만큼 건물항목에 소유권으로 신고 • 건물임대보증금의 경우에도 해당 지분만큼 채무항목에 건물임대채무로 신고

9.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소유자별 합계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개별 품목 모두 신고

- (가액산정) 신고기준일 현재 시장가격(시장가격×보유중량(g))으로 가액을 산정
 -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란에 실매입액 기재
 - ※ 보석류에 부착되어 있는 금 및 백금은 보석류 항목에 신고

10.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품목당 가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하고, 골동품 및 예술품은 품명, 크기(cm), 작가, 제작연대 등 작품 세부정보를 기재

- (가액산정) 신고기준일 현재 전문가 등의 평가액으로 가액을 산정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
 -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란에 실매입액 기재
 - ※ '비고'란에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회사 등의 이름, 연락처 등을 기재

11. 회원권

권당 가액이 5백만원 이상인 모든 회원권을 신고

- (신고대상) 권당 가액이 5백만원 이상인 골프·헬스·콘도미니엄 등의 모든 회원권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登記되어 있어도 '회원권' 항목에 신고하고 '비고'란에 면적 기재
- (골프회원권) 평가액(지방세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가액을 등록하되, 둘 중 어느 하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등록
※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 이택스(ETAX) 또는 회원권 소재지 지자체에 문의
- (그 외 회원권) 매입가격으로 신고

12. 지식재산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을 신고

- (신고방법)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등록번호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명세 기재
- (가액산정)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한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하고, '비고'란에 소득원인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13.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금액에 관계없이 합명·합자·유한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이 있는 경우 신고

- (신고방법) 합명·합자·유한회사에 대한 출자가액, 출자지분, 연간 매출액 등의 정보를 신고
※ 「상법」상 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체에 대한 출자지분은 등록대상 아님
※ 사업을 위해 등록대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채무 등 보유 형태에 따라 해당 항목에 신고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 기재

- **(확인방법)** 투자한 회사의 종류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주식회사인 경우 '주식'으로 신고하고, 합명·합자·유한회사인 경우 '출자지분'으로 신고

공개대상자의 경우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에 대한 **재산형성과정**(취득일자·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

- **(취득일자)** 출자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재일 등
- **(취득경위)** 회사와의 관계, 출자목적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간 채무 등 해당 출자지분의 자금 출처
- **(기 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14.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금액에 관계없이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이 있는 경우 신고

- **(신고방법)**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금액 또는 출연재산, 법인의 내역(명칭, 소재지, 대표자 등), 출연자가 비영리법인에서 보유하는 직위 및 직무 등을 신고
 - ※ 복지시설이나 자선단체 등에 납부한 **기부금 또는 펀드** 등은 **신고 대상 아님**
 - ※ 교회나 종중 등 사단·재단의 소유이나 등록대상자의 명의된 재산의 경우, '해당항목'에 신고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 기재
- **(확인방법)** 「민법」상 사단·재단법인과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신고
 - ※ 비상장 주식을 출자지분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주요 실수 사례

-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것은 문제되지만, 과다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가액을 여유있게 신고함
 - ☞ 재산신고는 등록의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며, 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누락), 많이 신고하거나(과다), 축소 신고하는(과소) 것 모두 잘못된 신고임. 심사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Q&A

질 문	답 변
<p>① 재산신고를 잘못된 경우 어떠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재산등록서류의 보완명령을 받을 수 있고 •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허위자료 제출·거짓 소명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하거나 심사에 응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p>②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가,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신청한 경우 재산공개자는 20일까지, 그 밖의 등록의무자는 30일까지 등록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음

4 공개목록 작성(재산공개대상자에 한함)

관보를 통해 대국민 공개가 되는 사항으로 재산항목별 정확하게 신고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

- (개인정보) 재산신고서 작성 후 자동 생성되는 공개목록 초안을 기초로 작성하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 (소속·직위) 신고기준일의 소속 및 직위를 기입
 - (광역의원) 【소속: ○○시·도의회】 / 【직위: 장/의원】
 - (기초단체장) 【소속: ○○시·도 ○○시·군】 / 【직위: 시장·군수·구청장】
 - (소속기관) 【소속: ○○부 ○○(기관명)】 / 【직위: 사장, 총장 등】
 - 예) 교육부 부산대학교/총장,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 (건물)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은 번지와 동·호수 기재 생략
 - 예) 단독주택 : ○○시 ○○동 대지 --㎡ 건물 --㎡
 - 아파트 : ○○시 ○○동 ○○아파트 건물 --㎡
 - 특히, 외국 소재 부동산 소유권 등의 경우 세부주소가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 필요
- (자동차) 연식, 차종, 배기량을 기재하고, 차량번호와 차량 제조회사는 기재 생략
 - 예) 2020년식 소나타 배기량(2000cc)
- (채권·채무) 채권·채무자의 주소, 성명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
- (고지거부 등) 고지거부하거나 등록제외한 친족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비교란에 기재 (독립생계유지, 타인부양 등)
- (비고)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소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재
 - 개인별, 계좌별로 특이사항이 있으면 기재
 - 예) 사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사모펀드 유형을 비교에 기재

5 신고서 제출

재산항목별로 정확하게 신고한 후 반드시 신고서 '제출' 버튼 클릭

- (신고마감) 신고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24시
- (제출방법) 각 재산항목 '저장' 후 신고서 제출 화면에서 반드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신고가 완료됨
- (신고서 수정) 등록기간 중에는 제출 후에도 언제든지 신고서 수정 가능. 신고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는 '신고서 수정 요청' 버튼 클릭 후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승인된 경우에만 수정 가능

※ 신고기간 종료 후 10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신고서 수정 불가

참고 4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예시)

소 속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직 위	의원	성 명	김공직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 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 액 (실거래가격)	비 고
▶ 토지(소계)					600,000	
본인	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1번지 1,490㎡			100,000 (50,000)	
조부	임야	경기 안산시 단원동 235번지 100㎡ 중 50㎡			200,000 (100,000)	
배우자	잡종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300번지 990㎡			200,000 (100,000)	
배우자	지상권	서울 노원구 상계동 103번지 100㎡중 50㎡			100,000 (100,000)	
▶ 건물(소계)					400,000	
본인	아파트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아파트 90㎡			20,000 (10,000)	
본인	아파트 (분양권)	세종 도담동 도래마을 3차아파트 90㎡			30,000	
배우자	연립주택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빌라 90㎡			100,000 (10,000)	
배우자	연립주택 (분양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대흥빌라 90㎡			150,000	
차남	빌딩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빌딩 대지 300㎡ 건물 90㎡			100,000 (10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0,000	
본인	자동차	2011년식 그랜저(배기량 2,500cc)			10,000 (10,000)	
▶ 현금(소계)					10,000	
배우자		현금			10,000	
▶ 예금(소계)					95,000	
본인		농협중앙회 20,000 우리은행 5,000			25,000	
배우자		국민은행 70,000			70,000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	
▶ 증권(소계)					120,000	
본인	상장주식	한국기업 5,000주, KT 100주			20,000	
배우자	공채	서울도시철도공사, 50좌			50,000	
차남	상장주식	국민은행 5,000주			50,000	주식백지신탁 예정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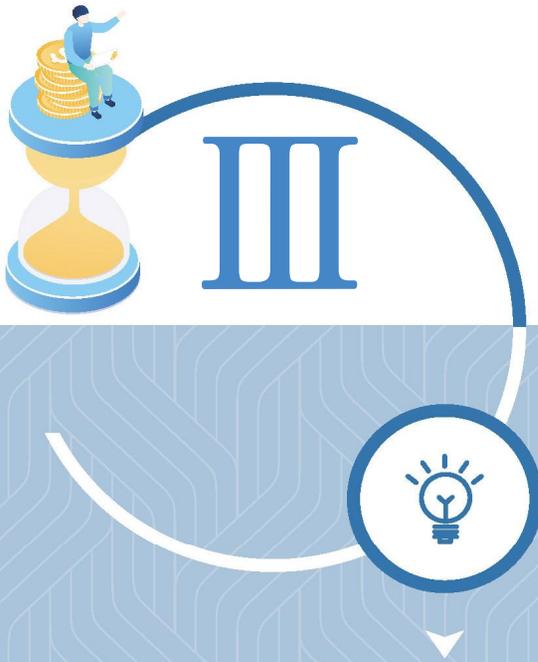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 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 액 (실거래가격)	비 고
▶ 채권(소계)			20,000	
본인		사인간 채권	20,000	
▶ 채무(소계)			120,000	
배우자	금융기관 채무	국민은행 10,000, 우리은행 20,000, 신한은행 40,000	70,000	
본인	건물임대 채무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아파트 임대보증금	50,000	
▶ 금 및 백금(소계)			10,000	
배우자		24K 금반지 100g	10,000 (8,213)	
▶ 보석류(소계)			45,000	
배우자		루비반지 붉은색	20,000 (15,000)	
배우자		다이아몬드 반지, 5캐럿	25,000 (25,000)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80,000	
본인	동양화	동양화(작품명 : 가을의풍경) 남농 허건, 160×320cm	50,000 (50,000)	
본인	도자기	도자기(고려청자), 작가미상, 160×320cm	30,000 (25,000)	
▶ 회원권(소계)			60,000	
본인	골프	한국컨트리클럽	10,000	
배우자	콘도 미니엄	현대콘도미니엄	50,000	
▶ 지식재산권				
본인	특허권	○○에 관한 특허	-	연·월·일 신규등록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100,000	
본인	출자	한국기업(합), 연간매출액 : 1,000,000, 출자지분 : 10%, 출자금액 : 100,000	100,000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본인	출연	서울문화재단, 보유직위 : 이사, 출연금 100,000	-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모		고지거부	-	타인부양
장남		고지거부	-	독립생계유지
총 계			1,670,000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날인)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등록 방법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III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등록 방법

최초 재산신고 대상자는 공직윤리시스템(PETI) 입력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성실하게 재산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윤리시스템 재산등록 순서

1 공직윤리시스템(PETI) 접속

2 최초(신규)신고서 작성

- 2-1. PETI 첫 화면
- 2-2. 본인정보 입력
- 2-3. 친족정보 입력
- 2-4. 고지거부 허가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 2-5. 총괄표 작성
- 2-6. 공개목록 작성(재산공개대상자에 한함)
- 2-7. 신고서 제출

3 신고서 제출 후 조회·수정

- 3-1. 제출신고서 조회
- 3-2. 신고서 수정



- 인터넷 브라우저를 실행하여 주소창에 “<https://www.peti.go.kr>” 을 입력
 ☞ Microsoft Edge 또는 Chrome 브라우저 실행
- 공직윤리시스템의 우측 상단 **로그인** 또는 **재산등록**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놓았을 때 나타나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접속



-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경우 인증서가 표시되지 않으므로 저장매체 클릭하여 보안프로그램 설치

□ 인증서 로그인 방법

- 사용 가능한 인증서의 종류
 -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 공무원 전용,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통해 발급
 - 공동·금융인증서(NPKI) : 금융거래용 인증서,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
 - ※ 금융인증서는 인터넷망에서만 사용 가능
- 처음 로그인하는 경우 사용하는 인증서에 따라 **공동인증서 등록** 또는 **금융인증서 등록** 클릭하여 인증서 등록 필수
 - 최초 1회만 등록하며, 등록 후 인증서 갱신 및 재발급 등으로 인해 변경되지 않을 경우 인증서 등록 없이 바로 로그인
- 인증서 등록 후 사용하는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하여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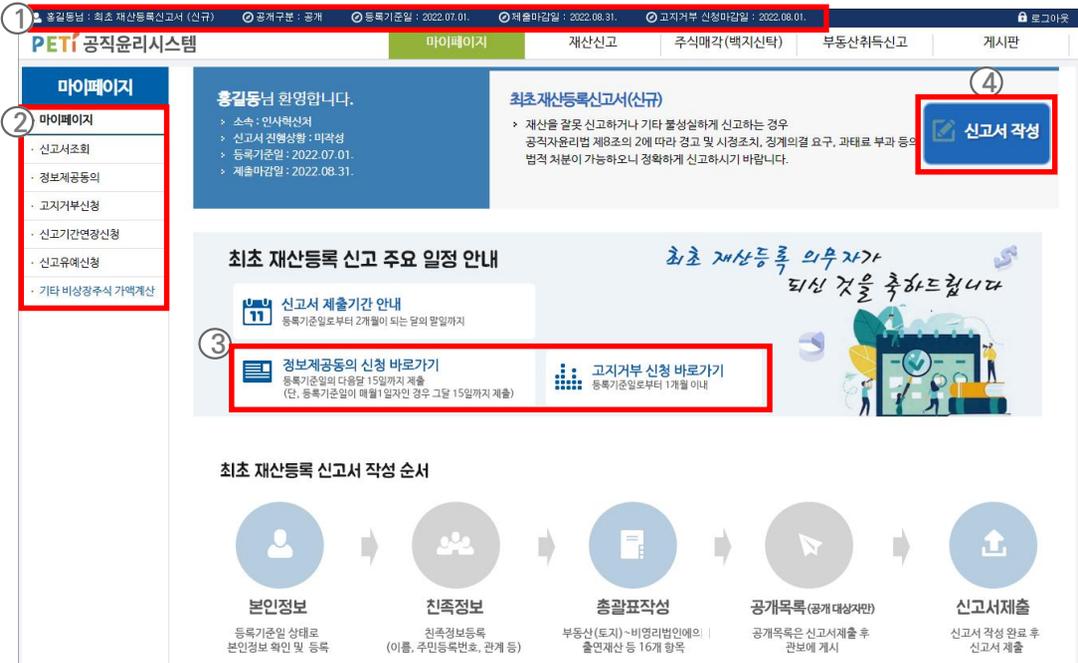
□ 휴대전화 인증 로그인 방법

- 인증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휴대전화번호 입력하여 휴대전화 인증 로그인 가능
 - ※ 운전면허증은 불가하며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5회 이상 잘못 입력할 경우 접속이 제한되어 '정부24' 사이트에서 잠금 해제 필요하므로 정확히 입력하여 진행
- 사용하는 인증서가 없을 경우 발급방법
 - ① 행정전자서명인증서 : 공무원인 경우에만 발급되며 소속기관별 담당부서를 통해 발급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담당부서 확인, <http://www.gpki.go.kr>)
 - ② 공동금융인증서 : 금융거래 등을 위한 인증서로 거래 금융기관이나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가능

2

최초(신규)신고서 작성

2-1. PETI 첫 화면



- ① 신고서의 등록기준일, 제출마감일, 고지거부(허가) 신청마감일을 확인
 ※ 고지거부는 등록기준일 1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기한일 이후 신청 불가
- ② 마이페이지 메뉴 주요기능

메뉴명		주요기능
신고서조회	제출신고서 조회	과거 제출한 신고서 조회 및 출력
	재산변동요약서 조회	과거 변동요약서 조회 및 출력
	공개목록조회	과거 공개목록 조회 및 출력(재산공개대상자에 한함)
	연도별 변동흐름 조회	과거 제출한 신고서 간의 변동흐름 조회
	소명서관리	소명서 작성 및 조회, 수정요청
	보완신고서관리	보완요청내역 확인 및 제출마감 등 정보 조회
정보제공동의		정보제공동의 신청현황과 동의(철회)서 제출
고지거부신청		고지거부 신청현황 확인과 신청서 제출

- ③ 법정기한 내 정보제공 동의 및 고지거부 신청 바로가기
- ④ 신고서작성 버튼 클릭하여 재산신고 진행
 - ◆ 정보제공동의자의 경우, 금융 및 부동산 정보가 제공된 이후 작성하셔야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간편하고 정확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2. 본인정보 입력

□ 등록의무자의 본인정보 입력

- 최초신고서 작성의 첫 번째 단계로, 등록기준일 기준 등록의무자의 성명, 상세소속, 직급, 직위, 자택주소 등 본인정보를 작성
 - 등록의무자의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일, 대표소속 등의 기본정보가 잘못된 경우, 소속기관의 윤리업무담당자에게 정정요청
- ① **선택하기** 버튼으로 상세소속, 직급 검색하여 입력하고, 직위는 직접 입력
- 자택주소와 직장주소를 ② **주소찾기** 검색버튼을 통해 입력

구 분	처리방법
도로명주소가 있는 국내 주소지	주소찾기 로 검색 후 선택
도로명주소가 없거나, 국외 주소지	[기타(국외 등)]로 선택 후 주소를 직접 입력

- ③ 거주형태는 자가, 전·월세, 기숙사, 관사, 친척집, 기타 중 선택
- ④ 연락처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은 필수사항) 현행화하여 기재
- 작성완료 후 **저장** 클릭하여 내용 저장, **다음** 클릭하여 [친척정보입력] 단계로 이동

2-3. 친족정보 입력

□ 친족정보 입력

STEP.01 본인정보
STEP.02 친족정보
STEP.03 총괄표작성
STEP.04 공개목록작성
STEP.05 신고서제출

☛ 재산신고 · 친족정보입력 [고지거부 신청기한] 2022-08-01 (D-26)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2.07.01." 기준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등록대상 친족보기
 비대상 : 계부(새아버지), 계모(새어머니), 양부모, 시(조)부, 시(조)모, 계자녀,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결혼한 딸 등

친족정보 * 대상자를 선택하면 친족정보 변경이 가능합니다. 추가하시려면 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주형태	직업	고지거부(기간)	등록대상	정보제공동의	무통산	금융
배우자	이배우	790102-2000000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로 15, 9동 909호 (도당동, 도행마을9단지)	자가	교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부	홍부친	500303-1000000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로 15, 9동 909호 (도당동, 도행마을9단지)	자가	무직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모	박모친	520707-2000000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로 15, 9동 909호 (도당동, 도행마을9단지)	자가	전업주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장남	홍장남	030909-3000000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로 15, 9동 909호 (도당동, 도행마을9단지)	자가	학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다음 사유에 해당하시면 해당란에 체크해 주세요.

- 직계존속(부모) 중 사망 등 등록제외 대상인 경우 해당란에 체크 부 모
-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음 사항 중 하나를 체크 ② 미혼 이혼 사별
- 자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대상 자녀없음에 체크 등록대상 자녀없음

미등록 친족 (상단 친족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정보제공 동의자 명단입니다.) 추가 : 미등록 친족 추가. 제외 : 정보제공동의 철회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융동의(철회)서	무통산동의(철회)서	비고
장녀	홍장녀	050501-4000000	③ 처리상태 동의	계출일 2022-07-01	처리상태 동의

미등록친족추가

파일첨부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tif,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hwp, hwpk 파일만 가능 0 개, 0 byte 추가됨

파일추가 | 파일삭제

이전
저장
다음

- ① 추가 클릭하여 친족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인적사항을 작성
 ※ 직계 존·비속이 고지거부 대상이라도 반드시 친족정보는 등록하여야 함

- ② 내용 확인 후 해당되는 내용에 체크

- 직계존속(부모)중 사망 등 등록제외 대상인 경우 [부/모]란에 체크
-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혼/이혼/사별]란에 반드시 체크
- 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 [등록대상 자녀없음]란에 체크(등록기준일 이전 결혼한 딸은 신고대상 아님)

- ③ 친족현황에 친족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친족을 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

상태	조치방법
등록대상 친족인 경우	미등록친족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친족으로 등록
등록대상 친족이 아닌 경우	해당 친족에 대한 정보제공동의철회서 제출

□ 친족추가 시

친족정보추가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 2022년 07월 01일 기준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관계 (필수)	배우자		
성명 (필수)	이배우		
주민등록번호 (필수)	790102	-	2222222 ① 실명인증 !

외국인 여부 주민등록번호 미소유자

추가정보

등록구분 (필수)	● 등록대상자		
직업 (필수)	교사 !		
주택주소 (필수)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로 15 9동 909호 (도당동, 도렘마을9단지)		
	도로명	30098	주소찾기 법정등록주소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로 15	9	동 909 호 (도당동, 도렘마을9단지) !
거주형태 (필수)	자가 ②		
비고			

③ 저장 닫기

- 등록의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주소, 직업 및 거주형태 등의 인적 사항 입력
 - 손·자녀 등록시 손·자녀의 아버지(의무자의 아들)를 먼저 등록 후 해당 손·자녀 추가
- ① 친족 추가 시 반드시 **실명인증** 을 진행하여야 함
 -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를 등록하고,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미소유자' 체크하여 등록

인증결과	내 용	이미지
성 공	실명인증 성공	
오 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외국인 포함)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경우	

- ② 거주형태는 자가·전 월세·기숙사·관사·친척집·기타에서 해당 거주형태 선택

선택창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형태를 선택 • 목록에 없는 경우 '기타'를 선택 후 직접 입력

- ③ 정보 입력 후 **저장**

2-4. 고지거부 허가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 고지거부 자가진단

☛ , 재산신고 , 친족정보입력 , 고지거부 신청 **심사기준보기** 고지거부 사유별 증명서류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2.07.01." 기준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고지거부 허가(재상사) 신청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어야 신고서 제출 가능합니다.
 ▶ 심사 결과가 '불허' 또는 '반려'인 경우(고지거부 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 해당 친족을 '등록대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고지거부 진행단계
 작성중(고지거부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저장상태) → 제출완료(추가 서류는 등록기관에 별도 문의) → 심사완료(결과 확인)
 ※ 고지거부 [제출완료] 상태에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소속하신 기관의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족정보 친족정보입력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고지거부(기간)	등록대상	정보제공동의	
						부동산	금융
배우자	이배우	790102-2000000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로 15, 9동 909호 (도당동, 도행마을9단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	동의
부	홍부친	500303-1000000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로 15, 9동 909호 (도당동, 도행마을9단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	동의
모	박모친	520707-2000000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로 15, 9동 909호 (도당동, 도행마을9단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	동의
장남	홍장남	030909-1000000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로 15, 9동 909호 (도당동, 도행마을9단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	동의

고지거부 신청(진행) 현황 고지거부 자가진단 고지거부 신청 고지거부 신청내역

☛ , 재산신고 , 친족정보입력 , 고지거부자가진단

▶ 고지거부 자가진단은 **진단 결과와 실제 신청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지거부 기본정보

-신청자 기준 정기변동신고대상자 신규허가 정기변동신고대상자 재심사 수시(최초, 퇴직, 의무면제 등) 재산신고 신규허가

-고지거부 사유 -현 주거지 구분 -가구원수(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소득기준(월) 0(천원)

※ 소득액은 세금 공제 전 총소득액 기준(천원단위 미만은 결사) / ※ 임대소득은 (월) 소득, 그외 근로/연금/사업/금융/기타소득은 (년) 소득을 입력해 주세요.

총 소득 (일반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0(천원)
일반소득	▶ 소계(일반소득 월 환산액)			0(천원)
	근로소득(년)	<input type="text"/>	0(천원)	월 소득환산 <input type="text"/> (천원)
	임대소득(월)	<input type="text"/>	0(천원)	월 소득환산 <input type="text"/> (천원)
	연금소득(년)	<input type="text"/>	0(천원)	월 소득환산 <input type="text"/> (천원)
	사업소득(년)	<input type="text"/>	0(천원)	월 소득환산 <input type="text"/> (천원)
	금융소득(년)	<input type="text"/>	0(천원)	월 소득환산 <input type="text"/> (천원)
	기타소득(년)	<input type="text"/>	0(천원)	월 소득환산 <input type="text"/> (천원)
재산소득	▶ 소계(재산소득 월 환산액)			0(천원)
	부동산 및 금융자산	<input type="text"/>	0(천원)	월 소득환산 <input type="text"/> (천원)
	소득환산율(기준일 CD금리)	<input type="text"/>	0(%)	금융투자협회 채권관리에서 기준일 CD금리 확인 : http://www.kofiabond.or.kr

고지거부 자가진단하기

- 고지거부 신청 전 **고지거부자가진단** 을 통하여 허가요건 충족여부 확인 가능
 ※ 고지거부 자가진단 결과와 실제 신청 결과는 다를 수 있음

□ 고지거부 허가 신청

고지거부신청
✕

성명	홍길동				
신청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허가 <input type="radio"/> 재심사	신청일	2022-07-20	공개여부	공개
소속	인사혁신처	직급	서기관	직위	

고지거부 사유별 증빙서류 친족에서추가 삭제 서식다운로드

<input type="checkbox"/>	관계	친족명	주민등록번호	고지거부사유	기타사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	홍무친	500303-1000000	독립생계유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모	박모친	520707-2000000	독립생계유지	

고지거부신청서 (필수)	파일 이름	파일 크기	등록일자
<input type="checkbox"/>	고지거부 신청서.PNG	18.64 KB	2022-07-20 11:02:18
최대 1 개 올릴 수 있음. jpg, gif, tif, zip, pdf, bmp, png 파일만 가능. 1 개, 18.64 KB 추가됨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추가"/>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삭제"/> <input type="button" value="다운로드"/>			

증빙서류	파일 이름	파일 크기	등록일자
<input type="checkbox"/>	고지거부 증빙서류.PNG	18.64 KB	2022-07-20 11:02:18
최대 10 개 올릴 수 있음. jpg, gif, tif, zip, pdf, bmp, png 파일만 가능. 1 개, 18.64 KB 추가됨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추가"/>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삭제"/> <input type="button" value="다운로드"/> <input type="button" value="전체 다운로드"/>			

※ 고지거부기간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반려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자료가 많으실 경우 압축파일(확장자: ZIP)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저장 삭제 제출 닫기

- 신규로 고지거부를 신청할 경우 [마이페이지] → [고지거부신청] → **고지거부 신청** 클릭
- **친족에서추가** 버튼 클릭하여 고지거부 신청대상자 선정 후 고지거부 사유 등 신청내역을 작성. 고지거부 신청서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저장** 하면 나타나는 **제출** 버튼 클릭하면 고지거부 신청 완료됨
 -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 및 친족의 서명(또는 날인)을 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스캔하여 첨부
 - ※ **제출** 버튼 클릭 후 추가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별도 제출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어야 최종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 심사결과가 불허인 경우 해당 친족의 재산항목을 등록하여야 함

□ 고지거부 심사결과 및 신청현황 확인

☞ 재산신고, 친족정보입력, 고지거부 신청 **심사기준보기** 고지거부 사유별 증명서류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2.07.01.' 기준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고지거부 허가(재심사) 신청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어야 신고서 제출 가능합니다.
 ▶ 심사 결과가 '불허' 또는 '반려'인 경우('고지거부 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 해당 친족을 '등록대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고지거부 진행단계
 작성중(고지거부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저장상태) → 제출완료(추가 서류는 등록기관에 별도 문의) → 심사완료(결과 확인)
 ※ 고지거부 [제출완료] 상태에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소속하신 기관의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족정보 친족정보입력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고지거부(기간)	등록대상	정보제공동의	
						부동산	금융
배우자	이백우	790102-2000000	세종특별자치시 보합로 15, 9동 909호 (도당동, 도렘마을9단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	동의
부	홍부친	500303-1000000	세종특별자치시 보합로 15, 9동 909호 (도당동, 도렘마을9단지)			동의	동의
모	박모친	520707-2000000	세종특별자치시 보합로 15, 9동 909호 (도당동, 도렘마을9단지)			동의	동의
장남	홍장남	030909-1000000	세종특별자치시 보합로 15, 9동 909호 (도당동, 도렘마을9단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	동의

고지거부 신청(진행)현황 고지거부 자가진단 고지거부 신청 고지거부 신청내역

※ 진행단계가 [작성중]인 것은 미제출 상태이므로 해당 건을 선택하여 나오는 화면에서 [제출] 버튼을 눌러 [제출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거부 허가신청 시 오른쪽 상단의 고지거부 마감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구분	신청사유	진행단계	신청일
조회 자료가 없습니다						

고지거부 심사결과 1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일	심사결과	고지거부(기간)	사유	증빙서류
부	홍부친	500303-1000000	2022-07-20	허가	2022-07-01 ~ 2025-12-30	독립생계유지	다운로드
모	박모친	520707-2000000	2022-07-20	허가	2022-07-01 ~ 2025-12-30	독립생계유지	다운로드

- ① [마이페이지] → [고지거부신청] 화면에서 '고지거부 심사결과' 확인
 - ② “고지거부 신청(진행)현황”의 고지거부 신청내역 을 클릭하여 이전에 신청한 고지거부 허가 내역 및 심사결과 확인
- ※ 심사결과가 '불허'인 경우 해당 친족의 재산을 모두 등록하여야 함
- ※ 심사결과가 '허가'인 경우 해당 친족을 친족정보에서 고지거부자로 체크하고 재산을 등록하지 않음

□ 고지거부 허가 친족 상태변경

친족정보수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2년 07월 01일" 기준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친족이 시(조)부모인 경우,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관계	부	성명	홍부친	주민등록번호	500303-1000000
----	---	----	-----	--------	----------------

추가정보

등록상태 (필수) 등록대상자 고지거부자 ?

직업 (필수) 무직 ?

==주택주소선택==

주택주소 (필수) 도로명 주소찾기 법정동주소 여부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로 15 9 동 호 (,) ?

거주형태 (필수) 자가

- 고지거부 허가받은 친족의 상세화면에서 등록상태를 '고지거부자'로 변경하여 저장
 - 고지거부자로 신고한 친족의 재산 및 제공정보는 신고서에서 제외됨



※ 고지거부 허가받은 친족을 고지거부자로 체크하지 않고 다음 진행할 경우 위와 같이 팝업 발생하며, 해당 팝업에서 바로 고지거부 적용 가능

☐ 금융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 , 재산신고 , 친족정보입력 , 정보제공동의

▶ 정보제공동의서 제출방법

1) 동의할 대상자 및 동의여부 선택(금융, 부동산) → 2) **동의서 내려받기** 버튼 클릭 후 출력하여 서명 → 3) 스캔하여 파일 첨부(PDF 파일만 가능) 후 **동의서 제출**
 ※ 정보제공동의서 처리(수정, 확인)는 소속하신 기관의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제공동의신청 마감일자 : 2022.07.15** 수시정보제공시기 안내

▶ **휴대전화번호가 없을 경우 연락가능한 연락처**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를 신규로 제출하는 경우 2020.06.04.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정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30일 이전 동의서는 수시 정보제공이 불가능하오니 **동의서를 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제공 동의신청 친족추가 | 추가친족 삭제

②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 휴대전화번호	최종신고서		동의여부	
					등록기준일	고지거부	금융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부	홍부친	500303-1000000	<input type="text"/>	2022-07-01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모	박모친	520707-2000000	<input type="text"/>	2022-07-01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장남	홍장남	030909-1000000	<input type="text"/>	2022-07-01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첨부파일 (필수)

파일 이름 파일 크기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최대 1 개 용량 무제한 pdf 파일만 가능 0 개, 0 byte 추가됨

동의서 내려받기

정보제공 동의/철회자 현황 (처리상태가 '동의'인 경우에만 정보제공이 됩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융동의(철회)서		부동산동의(철회)서		철회여부			
			처리상태	제출일	처리상태	제출일	금융	부동산	철회사유	
<input type="checkbox"/>	본인	홍길동	760505-1111111	동의	2022-07-05	동의	2022-07-05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이백우	790102-2000000	동의서 처리중	2022-07-11	동의서 처리중	2022-07-11			
<input type="checkbox"/>	장남	홍경남	030909-1000000	철회	2022-07-11	철회	2022-07-11			정보제공동의를 철회하려고 합니다.

첨부파일 (필수)

파일 이름 파일 크기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최대 1 개 용량 무제한 pdf 파일만 가능 0 개, 0 byte 추가됨

※ 동의서 처리중에는 철회처리 불가능합니다.

철회서 서식 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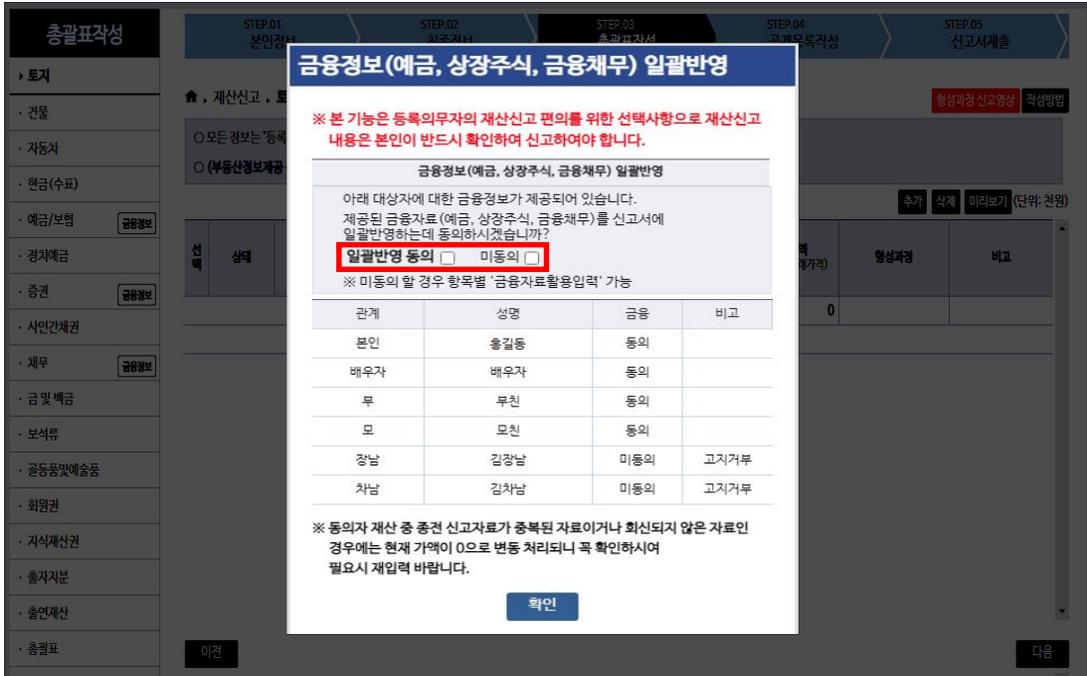
정보제공 동의/철회서 진행현황

제출일	제출구분	처리상태	성명	소속	직급	친족수	파일	반려사유
2022-07-11	동의	반려	홍길동	인사혁신처	서기관	1	내려받기	서명 누락
2022-07-11	동의	처리중	홍길동	인사혁신처	서기관	1	내려받기	
2022-07-11	철회	승인	홍길동	인사혁신처	서기관	1	내려받기	
2022-07-11	철회	승인	홍길동	인사혁신처	서기관	1	내려받기	
2022-07-05	동의	승인	홍길동	인사혁신처	서기관	3	내려받기	

- [마이페이지] - [정보제공동의]에서 정보제공동의(철회)서 제출 및 동의(철회) 현황 확인 가능
- 동의서 제출 방법
 - ① 휴대전화가 없는 친족의 경우 비상연락망을 기재하며, 윤리업무 담당자가 동의서 확인 완료하면 동의서 제출한 본인 및 친족에게 SMS를 통해 별도 안내
 - ② 동의할 친족 체크 후 **동의서 내려받기** 클릭한 뒤 서식에 체크한 친족 인적사항 입력내용을 확인 후 출력하여 대상자의 자필 서명을 받아 스캔하여 첨부
 - ※ 첨부파일은 진본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PDF파일로 스캔·첨부하여야 하며, 별도로 원본은 제출하지 않음
 - ③ '정보제공 동의신청' 목록 중 동의하고자 하는 친족을 체크(✓)한 후 **동의서 제출**을 클릭하여 '금융 및 부동산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 ④ '정보제공 동의/철회자 현황' 또는 ⑦ '정보제공 동의/철회서 진행현황'을 통해 '금융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 명단과 처리상태 확인 가능
 - ※ 소속기관 윤리업무담당자가 해당 동의서 '확인' 처리시 동의자에게 알림 문자 전송
 - ⑦ '정보제공 동의/철회서 진행현황'을 통해 '반려'된 동의(철회)서
 - ※ 소속기관 윤리업무담당자가 해당 동의서 '반려'한 경우에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반려사유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동의(철회)서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철회서 제출 방법
 - ⑤ **철회서 서식 다운**을 클릭하여 철회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입력내용을 확인 후 출력하여 대상자의 자필 서명을 받아 첨부
 - ⑥ '정보제공 동의/철회자 현황'에서 철회하고자 하는 대상자 체크(✓) 후 **철회서 제출** 클릭하여 '금융 및 부동산 정보제공' 철회서 제출 가능

2-5. 총괄표 작성

□ 금융정보 일괄반영



- 금융정보제공 동의한 경우 회신받은 금융자료를 신고서에 일괄 반영하는 기능
 - 최초 1회만 발생하는 팝업으로 '일괄반영 동의'시 예금·보험, 상장주식, 금융채무를 회신받은 자료로 반영, 미동의 시 각 항목별로 '금융정보활용입력' 활용하여 반영
 - ※ 본 기능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를 위한 선택사항이며, 재산신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내용은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재산총괄표 보기

- ① 부동산(토지)부터 총 16개의 재산신고 항목으로 클릭시 해당항목 이동
- ② 정보제공동의자는 **부동산정보열람** 클릭하면 부동산(토지, 건물) 정보 내역이 조회됨
 ※ **부동산정보열람** 내용이 이상 없으면 조회되는 소재지 정보 클릭하여 입력화면으로 이동
- ③ 등록된 부동산(토지) 재산항목의 총액(가액합산금액) 확인
- ④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추가** 클릭
- ⑤ 신규 추가한 항목을 삭제하는 경우 해당 재산항목 체크 후 **삭제** 클릭
- ⑥ **미리보기** 클릭하면 입력한 내역 미리보기 및 출력 가능
- ⑦ **이전** 클릭 시 이전 재산항목 이동, **다음** 클릭 시 다음 재산항목 이동

□ 부동산 정보 조회내역 보기

부동산(토지) 정보내역

※ 소재지를 선택하면 해당 정보 추가화면으로 이동됩니다.
 ※ 토지정보는 국토교통부 '토지대장'과 대법원 '등기사항증명서' 자료를 활용하므로 등록기준일의 보유정보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기준일자 보유정보를 직접 확인하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건물) 정보내역

※ 소재지를 선택하면 해당 정보 추가화면으로 이동됩니다.
 ※ 건물정보는 '지방세 과세자료(매년 6.1)'를 활용하므로 등록기준일 보유정보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기준일자 보유정보를 직접 확인하신 후 신고바랍니다.

소유자성명	조회기준일	소재지	면적(㎡)	지분비율	취득일자	용도	경보계공처
홍길동	2022-07-01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26번지 개나라아파트 1동 101호	61.90		2007-07-19	아파트	행정안전부
홍길동	2022-07-01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26번지 개나라아파트 1동 101호	61.90		2007-07-19	아파트	대법원

번호	변동일자	정보제공처
2005-01-21		국토교통부
2005-01-21		대법원

권리종류 (필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유권 <input type="checkbox"/> 임대여부 ※ 타인에게 임대(전,월세)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임대보증금"을 채무항목에 "임대채무"로 신고하십시오.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부동산(건물)]에 신고하지 말고 [회원권]에 신고하여야 하며, 면적은 비교란에 적으십시오.	
소재지 (필수)	지번	<input type="text" value="주소찾기"/>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일반 626 - 번지 개나라아파트 1 동 1 호 ※ 소재지 정보(지번)을 정확히 입력하셔야 공시가격이 자동계산 됩니다.	
종류 및 용도 (필수)	아파트	
건물면적 (필수)	전체면적:	<input type="text" value="84"/> (㎡)
대지면적	전체면적:	<input type="text"/> (㎡)

권리자 (필수)	건물자본면적 (필수)	대지면면적	가액 (필수)	실거래가격(실매입액) (필수)
배우자-이여왕	<input type="text" value="84"/>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천원) 공시가격조회	<input type="text"/> (천원)

※ [공시가격조회](#)를 클릭하여 조회하거나 인터넷망에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가액란에 실거래가격(매매가격, 취득가 등)이 평가액(공시지가 등)보다 높은 경우 반드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
 ※ 온라인으로 조회가 안되는 경우는 해당지역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경우 매입가나 사실상 거래가액을 기재)

- '부동산 정보제공'에 동의한 등록의무자는 **부동산정보열람** 을 클릭하여 부동산 소유정보 확인 가능
- ①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부동산 보유내역을 보여주며, 신규로 추가할 경우 해당 소재지 주소를 클릭하여 기본정보가 표시되면 추가적인 정보 입력하여 저장
 - ※ 토지정보는 국토교통부의 토지대장 자료와 대법원의 등기 자료가, 건물정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과세자료(6.1.기준)와 대법원의 등기 자료가 제공되므로 반드시 기준일자의 보유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 후 신고하여야 함

□ 토지(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입력방법

신규재산

관리종류 (필수)	소유권 ※ 타인에게 임대(전·월세)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임대보증금'을 채무항목에 '임대채무'로 신고하십시오. ※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지 (필수)	지번 주소찾기 ①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입암리 일반 1373 - 3 번지 ※ 소재지 정보(지번)를 정확히 입력하셔야 공시가격이 자동계산 됩니다.
지목 (필수)	답
전체면적 (필수)	250 (㎡) ②
관리자 (필수)	본인-홍길동
지분면적 (필수)	250 (㎡)
가액 (필수)	3,550 (천원) ③ 공시지가조회 [선택오입오만]됨
실거래가액(실매입액) (필수)	④ 공유자 추가 공유자 삭제
형성과정	⑤ 취득일자 (필수) 2003년 10월경 취득 (13 / 100) ※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취득경위 (필수) 조부에게 상속받은 토지 (12 / 300) ※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상속이므로 별도의 소득원 없음 소득원 (필수) 상속이므로 별도의 소득원 없음 (16 / 300) ※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기타 (0 / 300)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비고	※ 미등기 권리는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 ※ 외국 소재 부동산은 외화종류(달러, 파운드 등)를 기재하십시오.
파일첨부	파일 이름 파일 크기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tif, jpeg, gif, png, bmp, pdf, zip, hwp, hwpk 파일만 가능 0 개, 0 byte 추가됨 파일추가 파일삭제

저장 | 작성취소

- ① 소재지는 **주소찾기** 클릭하여 읍/면/동/리 조회 후 상세주소 직접 입력
 - 예) 소재지가 “경기도 안성시 공직면 청령리 3-1번지”인 경우 : **주소찾기** 클릭하여 “청령리”로 조회하여 선택 후 “3-1”은 직접 입력
 - ※ 소재지 정보(지번)를 정확히 입력해야 개별공시지가가 계산 됨
- ② 면적 입력
 - 공동소유인 경우 전체면적 먼저 기재 후 ④ **공유자 추가** 클릭하여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 기재

- ③ 가액은 실거래가격과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며,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조회** 클릭하여 조회
 - 소재지와 면적을 정확히 입력 후 **공시지가조회**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공시지가 조회” 팝업이 나타남
 - ※ 공동소유인 경우 반드시 공유자 추가하여 각 지분면적 기재

공시지가 조회
✕

※ 해당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에서 2022년 기준으로 조회된 금액입니다.

면적	250 (㎡)
개별공시지가(원/㎡)	14,200 (원)
가액 (필수)	3,550 (천원) (3,550,000 원)

확인
닫기

- 조회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가액 확인 후 **확인** 버튼 클릭하여 입력
 - ※ “공시지가 조회”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를 클릭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 후 가액을 직접 입력
- ⑤ 공개자 또는 비공개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 및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형성과정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항목이 필수사항이며, 이외 비공개자는 형성과정 항목이 선택사항임

□ 건물(소유권, 전세권, 분양권) 입력방법

신규재산

권리종류 (필수)	소유권 <input type="checkbox"/> 임대여부 <input type="checkbox"/> ※ 타인에게 임대(전, 월세)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임대보증금"을 채무항목에 "임대채무"로 신고하십시오.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부동산(건물)]에 신고하지 말고 [회원권]에 신고하여야 하며, 면적은 비고란에 적으십시오.			
소재지 (필수)	지번	<input type="text" value="주소찾기"/> ①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일반	626 -	번지
	개나리아파트	1	동	1호
	※ 소재지 정보(지번)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공시가격이 자동계산 됩니다.			
종류 및 용도 (필수)	아파트 ②			
건물면적 (필수)	전체면적:	84 (㎡)		
대지면적	전체면적:	(㎡)		
공유자 추가 공유자 삭제				
권리자 (필수)	건물지분면적 (필수)	대지면적	가액 (필수)	실거래가격(실매입액) (필수)
배우자-이여왕	84 (㎡)	(㎡)	280,000 (천원) <input type="button" value="공시가격조회"/> ③	280,000 (천원) <small>[이력불연속] 원 [이력불연속] 원</small>
※ 공시가격조회를 클릭하여 조회하거나 인터넷망에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가액란에 실거래가격(매매가격, 취득가 등)이 평가액(공시지가 등)보다 높은 경우 반드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 ※ 온라인으로 조회가 안되는 경우는 해당지역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경우 매매거나 사실상 거래가액을 기재)				
형성과정 ④	취득일자 (필수)	2016년 6월 매입 (11 / 100) ※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취득경위 (필수)	실거주를 위해 매입한 아파트 (16 / 300) ※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소득원 (필수)	계약금은 예금으로 납부하였고, 나머지는 중도금 대출을 통해 납부 (35 / 300) ※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건물을 취득한 자금 출처		
	기타	<input type="text"/>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		

- ① 소재지는 클릭하여 '읍/면/동/리 + 지번' 또는 건물명으로 조회
 - 예)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서구 공직동 229-6번지 공직 에세스 빌"인 경우 : 클릭 후 "공직 에세스 빌"로 조회, 동·호수는 직접 입력
 - ※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소재지 정보(지번)를 정확히 입력해야 공시가격이 계산 가능
 - 신도시 분양권 등의 이유로 주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을 으로 변경하여 직접 입력
- ② 종류 및 용도, 면적 입력
- ③ 가액은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며, 공시가격은 클릭하여 조회

- 소재지와 종류 및 용도를 정확히 입력 후 **공시가격조회**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공시가격 조회” 팝업창이 나타남

공시가격 조회 ✕

※ 해당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에서 2022년 기준으로 조회된 금액입니다.

면적	112 (㎡)	
개별주택가격	72,400,000 (원)	
가액 (글수)	72,400 (천원) (72,400,000 원)	

가액 = (건물지분면적 / 건물면적) * 개별주택가격 **확인** **닫기**

- 입력된 면적이 표시되며, **확인** 클릭하면 계산된 가액으로 입력
 - ※ “공시가격 조회”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인터넷망에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를 클릭하여 공시가격 확인 후 가액을 직접 입력
- ④ 공개자 또는 부동산 관련 업무 및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형성과정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항목이 필수사항이며, 비공개자는 형성과정 항목이 선택사항임

<유의사항>

- 소유자가 동일하고 건물이 있는 토지는 건물항목에 토지면적, 건물면적을 각각 신고하고, 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하여 신고
- 가액은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
 - ※ 실거래가격은 해당 부동산의 현 시세가 아닌 매입할 당시 금액임
- 전세권(임차권)인 경우 가액란에 계약서상의 전세(임차)보증금으로 신고
 - ※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임차)보증금은 채무 항목에 등록
-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 재산을 소유권, 전세(임차)권, 분양권 등으로 모두 등록

□ 자동차·건설기계 등 입력방법

권리종류 (필수)	자동차			
계력년도(년식) (필수)	2015 년식			
차명(자동차명) (필수)	제네시스			
배기량(CC) (필수)	2359 (cc)			
차량등록번호 (필수)	11가1234			
공동지분	소유자추가			
	① 소유자 (필수)	소유자구분 (필수)	지분율 (필수)	② 평가가액 (필수)
	본인-홍길동	<input checked="" type="radio"/> 대표소유자 <input type="radio"/> 공동소유자	99 (%)	27,720 (천원) [이천원백칠십이만] 원
	배우자-이배우	<input type="radio"/> 대표소유자 <input checked="" type="radio"/> 공동소유자	1 (%)	280 (천원) [이십팔만] 원
	①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② 「지방세법」 제4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④ 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실거래 가격			
형성과정	취득일자 (선택)	※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취득경위 (선택)	※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소득원 (선택)	※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재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		
	기타 (선택)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		
비고	※ 가액산정방법 (예: 자동차보험상 차량기준가액, 시가표준액, 실거래가격)을 기재하되, 권리를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분을 기재하고 "공유", "합유" 등으로 표시하십시오.			
파일첨부	<input type="checkbox"/> 파일 이름			파일 크기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tif,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hwp, hwpk 파일만 가능			
	<input type="button" value="파일 추가"/> <input type="button" value="파일 삭제"/>			0 개, 0 byte 추가됨
	<input type="button" value="저장"/>			<input type="button" value="작성취소"/>

- ① 공동소유일 경우 **+** **소유자추가** 클릭하고, 공동소유자 수와 지분율(소수점 이하 절사), 가액 입력
 ※ 등록대상 친족의 공동소유 재산일 경우 소유자별 해당 지분에 대해 각각 신고
- ② 자동차의 평가가액은 자동차보험 상의 차량기준액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 전문가평가액, 실거래가격 순서로 가액을 확인하여 기재

〈유의사항〉

- 리스 자동차는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다만, 리스로 인해 발생한 채권, 채무는 신고대상임
 ※ 리스 보증금은 증권의 기타채권으로, 리스 잔여 대금은 채무로 신고
- 건설기계, 선박 및 항공기는 평가액(지방세 시가표준액, 전문가 평가액 등)으로 신고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
- 광업권, 어업권은 시가 표준액 또는 전문가 평가액을 신고

□ 현금(수표 포함) 입력방법

신규재산	
소유자 (필수)	배우자-이배우
① 보유액 (필수)	10,000 (천원) [일천만] 원 ※ 소유자별로 합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며, 현금과 수표는 합산하십시오.
형성과정	취득일자 (선택) ※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취득경위 (선택) ※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소득원 (선택) ※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재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
	기타 (선택)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
② 비고	※ 현금을 보유하게 된 사유를 적으십시오.
파일첨부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input type="checkbox"/> 파일 이름 파일 크기 <p style="text-align: center;">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p> <p style="text-align: center;">  </p> <p style="font-size: small;">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tif,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hwp, hwpk 파일만 가능 0 개, 0 byte 추가됨</p> <p style="font-size: x-small;">파일추가 파일삭제</p> </div>
<input type="button" value="저장"/> <input type="button" value="작성취소"/>	

- ① 보유한 현금(수표 포함)을 “천원”단위로 입력
- ② 비고에 보관사유, 자금출처, 사용용도 등을 기재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

□ 예금·보험 입력방법

총괄표작성

- 토지
- 건물
- 자동차
- 현금(수표)
- ▶ **예금/보험** 금융정보
- 정치예금
- 증권 금융정보
- 시간간 채권
- 채무 금융정보
- 금 및 백금
- 보석류
- 골동품및예술품
- 회원권
- 지식재산권
- 출자지분
- 출연재산
- 총괄표

STEP.01 본인정보
STEP.02 친족정보
STEP.03 총괄표작성
STEP.04 공개목록작성
STEP.05 신고서제출

예금, 재산신고, 예금/보험 작성방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2.07.01." 기준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자별로 예금의 합계액(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포함)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 대상자의 모든 계좌를 등록하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별도의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계좌별 1천만원 이상이 아닙니다.)

○ 금융정보활용입력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금융기관 등록정보와 다른 경우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금융정보열람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 확인 후 금융정보활용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예금/보험 입력신고가 가능합니다.

구분	상태	관계	관리자	재산항목	①	②	관리종류	가액	형성과정	비고
계										0
조회 자료가 없습니다										

이전
다음

- ① 금융정보제공동의자는 금융정보열람 버튼을 클릭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확인

금융 정보내역

금융 보유정보에 대한 조회결과 금융기관연락처(엑셀) 금융기관연락처(PDF) 출력 닫기

(※ 금융기관 연락처는 매년 정기변동 시점인 12.31. 기준으로 반영화 됩니다)

1. 예금보유정보

2. 증권보유정보

3. 채무보유정보

※ 채권은 증권 항목에서 [열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1. 예금보유정보(예금, 보험, 예수금, 펀드) 등

소유자성명	조회기준일	금융기관명(계좌번호)	예금(상품)종류	예금잔액(천원)	계좌개설일	비고
계				72,080	-	-
출길동	2022-07-01	국민은행(457615-01-333333)	연금보험	5,000	2007-10-03	
출길동	2022-07-01	신한은행(110-345-1661313)	롤러버양치료	6,480	2011-01-01	
출길동	2022-07-01	우리은행(국내)(1002-135-111111)	우리스마트적금	22,100	2015-04-23	
이배우	2022-07-01	엔에이치농협증권(주)(234-409-135435)	CMA	1,500	2006-05-08	
이배우	2022-07-01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13-4943512)	암플러스총신보험	24,000	2011-12-01	
출무친	2022-07-01	국민은행(412345-01-444444)	자유적금	0	2010-10-10	
출무친	2022-07-01	국민은행(431564-02-6134812)	청약저축	13,000	2009-02-18	

※ 예금, 증권, 채무 보유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 상장주식을 제외한 항목(국채, 공채, 회사채 등)은 금융정보활용입력을 통한 일괄 등록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금융정보 열람자료를 출력하여 수기 입력

- ② 제공된 금융자료가 이상이 없는 경우 **금융정보활용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일괄반영

<유의사항>

-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관리번호-일련번호”형태로 입력
- 급여에서 자동 이체되는 지방행정공제회 등의 계좌도 신고대상으로 누락 주의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부금액은 신고대상 아니며, 연금공단에서 발생한 채무는 ‘채무’항목으로 신고
- 간접금융상품(MMF, 수익증권, 뮤츄얼펀드, 추가연계증권, ELS, CMA, MMDA) 및 예수금은 예금항목에 등록
- 마이너스 통장은 등록기준일 계좌잔액이 ‘+’이면 예금 항목에, ‘-’면 채무항목에 등록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은 신고 제외(예 : 자동차보험 등)
- 보험신고 시 등록기준일까지 납입한 총 납입액을 신고

☐ 금융정보활용입력

☛ 재산신고, 예금/보험, 금융정보활용입력

금융정보활용입력(예금/보험 등)

-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신고하는 화면입니다.
- 최종적으로 회신정보와 신고내용을 비교 확인하고 **일괄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 채권은 증권 항목에서 [열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에서 회신받은 자료를 이전에 신고한 자료와 비교한 계좌 (6건) 미리보기

관계	소유자	예탁기관(계좌번호)	예탁종류	현재가액 (천원)	비고
본인	홍길동	국민은행 (457615-01-333333)	연금보험	5,000	
본인	홍길동	신한은행 (110-345-1661313)	올키버암치료	6,480	
본인	홍길동	우리은행(국내) (1002-135-111111)	우리스마트적금	22,100	
배우자	배우자	엔에이치농협증권(주) (234-409-135435)	CMA	1,500	
배우자	배우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3-4943512)	암플러스종신보험	24,000	
부	부친	국민은행 (431564-02-6134812)	청약저축	13,000	

②

일괄저장 변동취소

- ① **현재가액란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이 표시됨**
 - 등록기준일자의 현재가액란에 표시된 금액이 실제 보유금액과 다를 경우 먼저 일괄저장한 후 총괄표 목록에서 개별적으로 수정할 수 있음
- ② **최종적으로 내용 확인 후 일괄저장 클릭하여 총괄표에 일괄반영 가능**
 - **변동취소** 클릭 시 총괄표에 반영되지 않음

<유의사항>

- 본 기능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를 위한 선택사항이며, 재산신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내용은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금융정보활용입력은 예금/보험, 증권, 채무항목에서 각각 진행해야 함

□ 정치예금 입력방법

신규재산		
소유자 (필수)	배우자-이배우 ※ 보험인 경우 계약자 기준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예탁기관 (필수)	우리은행(국내) 선택	
예금종류 (필수)	정치예금	
계좌번호 (필수)	1002-123-456789 1	
개설일자 (필수)	2019-06-07 📅	
만기일자	📅	
보유액 (필수)	10,000 (천원) [일천만] 원 ※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적으십시오. ※ 보유액이 마이너스인 예금은 채무항목에 신고하십시오.	
형성과정	취득일자 (선택)	<input type="text"/> ※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취득경위 (선택)	<input type="text"/> ※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소득권 (선택)	<input type="text"/> ※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정치예금을 취득한 자금 출처
	기타 (선택)	<input type="text"/>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
비고 2	<input type="text"/> ※ 해당계좌가 수입용인지 지출용인지 적으십시오.	
파일첨부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input type="checkbox"/> 파일 이름 파일 크기 <div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10px 0;">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div> <div style="font-size: small; border-top: 1px solid gray; padding-top: 5px;"> 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ttf,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hwp, hwpx; 파일만 가능 0 개, 0 byte 추가됨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font-size: x-small;"> 파일 추가 파일 삭제 </div> </div>	
저장 작성취소		

- ①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관리번호-일련번호”형태로 입력
 - ② 비고란에 해당계좌의 용도를 기재(수입용 또는 지출용)
 - 예금 항목에 동일한 계좌가 등록되어있을 경우 정치예금 항목으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 후 예금항목에 신고 된 계좌 삭제 후 신고
- ※ 예금항목에 등록된 계좌를 정치예금에 중복 입력하여 저장할 경우 아래와 같은 팝업 발생

알림

예금에 신고된 계좌입니다.
예금/보험에 동일한 계좌가 존재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신고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 입력방법

※ 재산신고,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 형성과정 신고영산 작성방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2.07.01." 기준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십시오.
 ○ 금융정보활용입력 시 성명, **금융정보제공 동의자** ①, **금융정보이용력** ②, **금융정보활용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 확인 후 신고하십시오.
 ○ 기타 비상장주식(K-OTC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을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는 **기타 비상장주식 등록/변경** ④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하십시오.

신규재산

소유자 (필수)	본인-홍길동
권리종류 (필수)	상장주식 ②
예약기관 (필수)	유안타증권 선택하기
계좌번호 (필수)	123-111-1012
발행인(종목명) (필수)	공직전자
종목코드(단축코드) (필수)	001313 ③
수량 (필수)	1,000 (주)
가액 (필수)	10,000 (천원) [일천만] 원 계산하기

※ 가액은 수량을 입력하시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에 주식시세를 입력하면 자동계산 됩니다.
 ※ 등록기준일의 증가 기준으로 입력하십시오.

형성과정

취득일자 (선택)	<input type="text"/>
취득경위 (선택)	<input type="text"/>
소득원 (선택)	<input type="text"/>
기타 (선택)	<input type="text"/>

※ 거래계약일, 주주명부 등재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등
 ※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증권을 취득한 자금 출처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

비고

파일 이름 파일 크기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마우스 드래그 하세요.

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파일 형식: 파일명 가능

파일 추가 파일 삭제

저장 작성취소

- ① 금융정보제공 동의자는 **금융정보열람** 버튼을 클릭하여 제공받은 자료 확인이 가능하며, 상장주식인 경우 **금융정보활용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일괄반영 가능
 - 상장주식을 제외한 항목(국채, 공채, 회사채, 기타비상장주식 등)은 금융정보 활용입력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제공받은 금융자료 출력하여 수기 입력
- ② 상장주식, 국채, 공채, 회사채, 금융채, 주식백지신탁, 제3시장주식(K-OTC), 기타(채권) 등을 선택
 - ※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은 '기타비상장주식등록/변경'에서 신고하지 않고, 권리종류를 '제3시장주식(K-OTC)' 선택하여 '거래량가중평균가'로 신고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어음, 환매채, 자동차 리스보증금 등의 경우에는 권리 종류를 '기타(채권)'으로 신고
- ③ 상장주식인 경우 종목코드(단축코드)는 **증권정보포털(SEIBro)** 클릭하여 확인
- ④ 기타 비상장주식의 경우 **기타비상장주식등록/변경** 클릭하여 별도의 화면에서 진행

□ 기타 비상장주식 입력방법

☛ , 재산신고 , 증권 , 기타 비상장주식 ④ 기업정보확인서 신고 영상 구비서류 작성방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2.07.01" 기준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법인의 주식을 여러명의 친족이 소유한 경우 **소유자 추가** 및 **진단하기**를 통해 신고하십시오.
 ○ K-OTC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거래량 가중평균가'를 확인하여 '증권' 항목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추가 삭제

선택	상태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최종가액유형	최종가액 (1주당/원)	가액 (천원)
계						0
조회 자료가 없습니다						

신규재산

법인 기본정보

법인명 (필수)	<input type="text"/>	②
법인등록번호 (필수)	<input type="checkbox"/> 외국기업여부 (※ 해외 법인인 경우에 체크해주세요.) <input type="text"/>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록된 법인등록번호를 '-'없이 13자리 연속 입력하세요. ※ 법인등록번호 검색은 한국거래소 또는 전자공시시스템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주당액면가 (필수)	<input type="text"/> (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1주당 액면가를 입력하세요.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기본정보 저장 ③

- ① **추가** 클릭하여 법인등록 진행
 - 다른 재산은 소유자 기준으로 등록하지만, 기타비상장주식은 법인 기준으로 등록
- ②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1주당액면가 확인하여 입력
 - 법인등록번호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에서 확인 가능하며, 1주당 액면가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에서 확인하여 입력
- ③ 법인기본정보를 반드시 먼저 저장한 뒤 다음단계 진행
- ④ **기업정보확인서** : 기타비상장주식 신고를 위한 법인의 재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서식을 내려 받아 법인에게 요청
 - 신고 영상** : 기타비상장주식의 상황별 신고 방법을 참고할 수 있도록 영상 제공
 - 구비서류** : 최종가액유형에 따른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파일 첨부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

소유자별 재산 정보 소유자 추가

최종가액유형		평가액	1주당 최종가액		35,600 (원)
선택	① 소유자	수량	가액진단	진단가액유형	⑥ 1주당 진단가액
	본인-홍길동	600 (주) (국책)주	진단하기	평가액	35,600 (원) (실한오천육백) 원
					③
					⑦
	④	형성과정	취득일자 (필수) 2021년 1월 4일 취득 (14 / 300) ※ 거래계약일, 주주명부 등제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등 취득경위 (필수) 투자를 목적으로 지인에게 소개받아 매입함 (22 / 300) ※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소득원 (필수) 타 증권을 매도한 대금으로 매입 (17 / 300) ※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증권을 취득한 자금 출처 기타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		
		특기사항			
	⑦	파일첨부 (필수)	파일 이름 <input type="checkbox"/> 기업정보확인서.PNG 18.64 KB 최대 10 개 올릴 수 제한 tif,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hwp, hwpk 파일만 가능 1 개, 18.64 KB 추가됨 파일추가 파일삭제		
			⑤	계산하기	⑧ 저장
					작성취소

- ① 가액 진단을 위해 먼저 소유자와 수량 입력
- ② **진단하기** 수행하여 계산 될 가액의 유형 산정
 - 가액 유형에는 실거래가격, 평가액, 액면가가 있음
 - ※ 다음 '기타 비상장주식 : 신고가액 진단하기' 방법 참고
- ③ 진단을 통해 산정된 소유자별 가액 유형이 표시됨
- ④ 공개자는 형성과정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항목이 필수사항이며, 비공개자는 형성과정 항목이 선택사항임
- ⑤ 산정된 진단가액유형(③)에 따라 **계산하기** 클릭하여 결정가액 계산
 - 진단가액유형이 평가액인 경우에만 '평가액 계산하기' 팝업이 발생하며, 실거래가격인 경우 의무자가 입력한 1주당 실거래가격으로 자동 계산됨
 - 2명 이상의 소유자의 진단가액유형이 실거래가격으로 동일하고, 최근매매 일자가 같은 경우 계산하기 클릭 시 최근 거래 대상이 누구인지 의무자가 직접 선택하여 진행해야 함
 - ※ 다음 '기타 비상장주식 : 평가액 계산하기' 방법 참고

- ⑥ 소유자별 1주당 진단가액이 표시되며, 최종가액유형에 따른 최종 가액이 계산됨
- ⑦ 우측 상단 **구비서류** 또는 팝업으로 안내되는 구비서류 첨부
- ⑧ 모든 항목 입력 후 **저장** 클릭

□ 기타 비상장주식 : 신고가액 진단하기

신고가액 진단하기

최근매매일자 (일수) (매입,매도)	2021-01-01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최근6개월(2020.09.18 ~ 2021.03.17)이내 매매 없음	②
	※ 입력한 최근매매일로 등록기준일 (2021.03.17) 기준 6개월 이내인지 자동 확인됩니다.	
국세신고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 국세신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를 선택하세요.	③
제3자거래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 등록대상 친족이 아닌 제3자와 거래한 경우 "예"를 선택하세요.	④
1주당 액면가	5,000 (원)	
발행주식총수	9,067,263 (주) [구역육만칠천이백육십삼] 주	
	※ 최근매매일자 기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입력하세요. (법인등기부등본 등 참고)	
매매수량	600 (주) [육백] 주	⑤
	※ 최근매매일자의 매입 또는 매도 수량을 입력하세요.	
1주당 실거래가격	6,500 (원) [육천오백] 원	
	※ 최근매매일자 기준 매입 또는 매도한 1주당 실거래가격을 입력하세요.	
진단하기		
진단 결과		
진단가액유형	평가액	⑥
	1주당 진단가액	(원)
⑦ 진단완료		
<p>○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거래가격으로 인정</p> <p>① (거래시기) 재산등록 기준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 (매도 또는 매입)</p> <p>※ 해당 기간 중 둘 이상의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매매를 말함</p> <p>② (거래상대방)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단, 재산등록사항을 고지거부한 사람 제외) 상호 간이 아닌 제3자와 매매거래</p> <p>③ (거래규모) 매매한 주식의 총수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매매일 기준)의 1% 또는 매매한 주식의 합계액 (액면가 기준)이 3억원 이상</p> <p>※ 발행주식 총수 또는 액면가는 주식발행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p> <p>④ (입증가능성) 매매로 인해 납부 의무가 발생한 국세 신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어야 함</p> <p>*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등</p> <p>다만, 실거래가격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로 신고</p>		

- ①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가액유형은 실거래가격으로 산정됨
- ② 등록기준일 이전 6개월 이내 매매여부를 선택. 매매 없음으로 할 경우 진단가액유형은 바로 평가액이 되며, 다음 항목 기재하지 않고 ⑦ [진단완료](#) 클릭
- ③ 국세신고여부와, ④ 제3자 거래여부 선택. 두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아니오'에 체크 될 경우 평가액으로 진단됨
- ⑤ 국세신고여부와 제3자 거래여부가 '예'로 체크 된 경우에만 활성화되며, 최근 매매일자 기준 발행주식총수, 최근 매매수량, 최근 매매한 1주당 실거래가격 입력
- ⑥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진단하기](#) 클릭하면 진단 결과 표시
- ⑦ 진단 결과 확인 후 [진단완료](#) 클릭
 - 진단완료 클릭 시 진단 결과에 따른 증빙자료를 팝업으로 안내

□ 기타 비상장주식 : 평가액 계산하기

평가액 계산하기

기업정보 확인서(공직자유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호의4)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선택하세요.

해당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법인이 회계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A)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휴업·폐업 중인 법인(B)

■ 평가대상 기업 재무정보

1주당 액면가	5,000 (원)	
발행주식총수	9,067,263 (주) [구백육만칠천이백육십삼 주]	
자산총액	2,399,863,325,445 (원) [이조심천구백구십팔억육천삼백삼십이만오천사백사십오 원]	
부채총액	1,996,368,162,220 (원) [일조구천구백육십삼억육천백일십이천이백이십 원]	
순자산가액	403,495,163,225 (원) [사천삼십사억구천오백일십육만삼천이백이십오 원]	

사업연도	최근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직전전 사업연도
	2020-01-01 ~ 2020-12-31	2019-01-01 ~ 2019-12-31	2018-01-01 ~ 2018-12-31
당기순이익	22,996,028,686 (원) [이백이십구억구천육백이만칠천육백삼십육 원]	26,589,126,668 (원) [이백육십오억팔천구백일십이만육천육백육십팔 원]	8,171,212,768 (원) [팔십일억칠천일백이십일만이천칠백육십팔 원]
발행주식총수	9,067,263 (주) [구백육만칠천이백육십삼 주]	9,067,263 (주) [구백육만칠천이백육십삼 주]	9,067,263 (주) [구백육만칠천이백육십삼 주]
1주당 당기순이익	2,536 (원) [이천오백삼십육 원]	2,932 (원) [이천구백삼십이 원]	901 (원) [구백일 원]

1주당 평가액 계산하기
다시입력하기

■ 기타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	2,395 (원) [이천삼백구십오 원]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	23,950 (원) [이만삼천구백오십 원]
1주당 순자산가치	44,500 (원) [사만사천오백 원]
1주당 평가액	35,600 (원) [삼만오천육백 원]

계산완료

- 평가액으로 진단된 경우에만 ‘평가액 계산하기’ 팝업 발생
 - ※ 진단결과가 실거래가격인 경우 의무자가 입력한 1주당 실거래가격으로 가액이 자동 계산됨
 - ※ 소유자가 2명 이상일 때 진단가액유형이 각 실거래가격, 평가액으로 상이한 경우 해당 [평가액 계산하기] 팝업이 나타나지 않으며, 실거래가격으로 계산됨
- ① 3가지 항목 중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체크하여 진행
 - 해당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평가대상 기업 재무정보가 모두 비활성화되며, 1주당 평가액 계산하기 클릭 시 최종 1주당 평가액은 액면가로 계산됨
 - 현재 청산절차 진행 중 또는 휴·폐업중인 경우 : 사업연도 ~ 1주당 당기순이익이 비활성화되어 나머지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여 평가액 계산

- ②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입력 시 순자산 가액 자동 계산되며, 단위 착오 없이 기재
 ※ 순자산 가액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③ 해당 법인의 최근, 직전, 직전 전 사업연도를 중복되지 않게 입력
- ④ 당기순이익과 발행주식총수 입력 시 1주당 당기순이익 자동계산
 ※ 1주당 당기순이익 = 당기순이익 ÷ 발행주식총수
- ⑤ 모든 작업 완료 후 **1주당 평가액 계산하기** 클릭하여 자동으로 평가액 계산
 - 일반적으로 1주당 평가액은 1주당 평가액 산정방식(?) 버튼 참고)에 따라 결정되나,
 - ① 항목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또는 휴·폐업중인 경우에 해당하면 평가액은 순자산가치를 따름
 - ※ 계산된 1주당 평가액보다 액면가가 높은 경우 최종가액은 액면가로 계산되지만, 청산 또는 휴·폐업중인 경우라면 액면가가 높더라도 1주당 평가액으로 최종가액 계산
- ⑥ 모든 작업 완료 후 **계산완료** 클릭하면 첨부해야 하는 구비서류 안내팝업이 발생하며, 최종가액유형과 1주당 최종가액이 자동 계산됨

□ 사인간 채권 입력방법

신규재산	
채권자 (필수)	배우자-이배우 ①
채권종류 (필수)	사인간채권
채권액 (필수)	10,000 (천원) [일천만] 원 ②
발생일자 (필수)	2021-06-30
만기일자 (필수)	2024-06-29
채무자 (필수)	이재우
채무자 주소 (필수)	도로명 30098 주소찾기 세종특별자치시 보합로 15- 9동 909호 (도담동, 도담마을9단지)
채무자 전화번호 (필수)	010-9876-5432 예: 010-1234-5678
형성과정	취득일자 (필수) 2021년 6월 30일 ③ (12 / 10)
	취득경위 (필수) 채무자와 친인척 관계로, 전세금 납부를 위해 빌려줌 (28 / 30)
	소득원 (필수) 보유중인 예금으로 빌려줌 (13 / 30)
	기타
비고	
파일첨부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input type="checkbox"/> 파일 이름 파일 크기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div> <div style="font-size: 8px; margin: 5px 0;"> 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tif,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hwp, hwpk 파일만 가능 0 개, 0 byte 추가됨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font-size: 8px;"> 파일 추가 파일 삭제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100%;"> 저장 작성취소 </div>	

- ① 채권자 선택
- ② 채권액은 “천원” 단위로 입력
- ③ 공개자는 형성과정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항목이 필수사항이며, 비공개자는 형성과정 항목이 선택사항임

□ 채무 입력방법

☞ , 재산신고 , 채무(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건물(또는 토지) 임대 채무) 형성과정 신고영상 작성방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2.07.01." 기준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정보활용입력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금융기관 등록정보와 다른 경우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금융정보열람** 을 클릭하여 내용 확인 후 **금융정보활용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금융채무 일괄신고가 가능합니다.
 ※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받은 전세(임대) 보증금은 '건물임대채무'로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 삭제 미리보기 (단위: 천원)

신규채무

채무자 (필수)	본인-홍길동	
채무종류 (필수) ①	사인간채무	
채무액 (필수)	10,000 (천원) [일천만원]	
발생일자 (필수)	2022-01-13	
만기일자 (필수)	2023-01-12 만기일자삭제	
채권자 (필수)	홍채권 · 채권자와의 관계 : 친척 예: 친척, 친구 등	
채권자 주소	도로명 우주소기	
채권자 전화번호 (필수)	010-1522-4273 예: 010-1234-5678	
형성과정 ②	취득일자 (필수)	2022년 1월 13일 (12 / 100) ※ 계약이체일, 차용일 등
	취득경위 (필수)	전세금 납부를 위해 친척에게 1천만원 빌림 (23 / 300) ※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의 사용목적 등
	기타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비고	※ 채무의 용도 등을 기재하십시오.	
파일첨부	<input type="checkbox"/> 파일 이름 파일 크기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tif,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hwp, hwpx 파일만 가능 0 개, 0 byte 추가됨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추가"/>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삭제"/>	

저장 작성취소

- 금융정보제공 동의자는 **금융정보열람** 버튼을 클릭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확인
- 금융채무인 경우 **금융정보활용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일괄반영 가능
- ① 금융채무, 건물임대채무, 토지임대채무, 사인간채무 등을 선택
 ※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먼저 건물항목에 소유권으로 등록한 뒤 보증금은 채무종류를 '건물임대채무'로 선택하여 등록(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는 경우 채무는 등록하지 않음)
- ② 사인간채무 입력 시 공개자는 형성과정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항목이 필수사항이며, 비공개자는 형성과정 항목이 선택사항임

□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입력방법

신규재산

소유자 (필수)	모-모친
종류 (필수)	
량량	24 (K 예시) 24(K), 18(K) 등
보유량 (필수)	4 (g) ※ 금 1(한)돈 중량: 3.75g
가액 (필수)	5,000 (천원) [오백만 원] 한국금거래소 ①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취득일자 (선택)		※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취득경위 (선택)		※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소득원 (선택)		※ 금 및 백금을 취득한 자금 출처
	기타 (선택)		※ 그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비고

파일첨부	<input type="checkbox"/> 파일 이름	파일 크기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t,jpg,jpeg,gif,png,bmp,pdf,zip,hwp,hwpk 파일만 가능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추가"/>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삭제"/>		0 개, 0 byte 추가됨

②

- ① '가액'은 등록기준일 기준 감정가 등 시장거래금액으로 산정
- ② 모든 작업 완료 후 **저장** 클릭

□ 보석류 입력방법

신규재산											
소유자 (필수)	배우자-배우자										
종류 (필수)	다이아몬드										
크기	1캐럿 ※ 예 : 10캐럿, 10C										
색상	흰색										
가액 (필수)	12,000 (천원) [일천이백만] 원 한국보석감정사업회 ①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취득일자 (선택)	※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취득경위 (선택)	※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소득원 (선택)	※보석류를 취득한 자금 출처									
	기타 (선택)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비고	※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적으십시오.										
파일첨부	<table border="1"> <thead> <tr> <th>파일 이름</th> <th>파일 크기</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r> <td colspan="2">최대 10 개 올릴 수 제한. gif, jpeg, png, bmp, pdf, zip, hwp, hwpx 파일만 가능</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0 개, 0 byte 첨부</td> </tr> </tbody> </table> <p>파일추가 파일삭제</p>	파일 이름	파일 크기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최대 10 개 올릴 수 제한. gif, jpeg, png, bmp, pdf, zip, hwp, hwpx 파일만 가능		0 개, 0 byte 첨부	
파일 이름	파일 크기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최대 10 개 올릴 수 제한. gif, jpeg, png, bmp, pdf, zip, hwp, hwpx 파일만 가능											
0 개, 0 byte 첨부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저장</div> ②											
작성취소											

- ① '가액'은 등록기준일의 전문가 등의 평가액으로 산정,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산정
 ※ '비고'란에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
- ② 모든 작업 완료 후 **저장** 클릭

□ 골동품 및 예술품 입력방법

신규재산											
소유자 (필수)	모-모현										
종류 (필수)	동양화										
종명	네이처 ※ 작품명과 작품의 특기사항을 기재하십시오.										
크기	50*50 ※ 가로*세로*높이를 cm로 기재하십시오.										
격자	이**										
제작연대	1950년대										
가액 (필수)	30,000 (천원) [삼천만원] 한국고미술협회 ①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취득일자 (선택) ※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취득경위 (선택) ※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소득원 (선택) ※골동품 및 예술품 취득한 자금 출처										
	기타 (선택)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비고	※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적으십시오.										
파일경부	<table border="1"> <thead> <tr> <th>파일 이름</th> <th>파일 크기</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r> <td colspan="2">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if,jog,jeq,gif,png,bmp,pdf,zip,hwp,hwpx 파일만 가능</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0 개, 0 byte 추가됨</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저장 ②</p> <p style="text-align: right;">작성취소</p>	파일 이름	파일 크기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if,jog,jeq,gif,png,bmp,pdf,zip,hwp,hwpx 파일만 가능		0 개, 0 byte 추가됨	
파일 이름	파일 크기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if,jog,jeq,gif,png,bmp,pdf,zip,hwp,hwpx 파일만 가능											
0 개, 0 byte 추가됨											

- ① '가액'은 등록기준일 기준 전문가 등의 평가액으로 산정,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산정
 ※ '비고'란에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
- ② 모든 작업 완료 후 **저장** 클릭

□ 회원권 입력방법

신규재산	
소유자 (필수)	<input type="text" value="본인-김주식"/> <small>※ 골프·헬스·콘도미니엄 등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해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회원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회원권이 변동된 경우에 등록하십시오.</small>
종류 (필수)	<input type="text" value="골프"/>
발행인 (필수)	<input type="text" value="레이크힐스제주골프클럽"/> <small>예 : ○○컨트리클럽,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등 ※ 발행인란에는 구체적인 회원권 명칭을 입력하십시오.</small>
소재지	<input type="text" value="도로명"/> <input type="text" value="동"/> <input type="text" value="호"/> <small>※ 회원권이 있는 곳(동기가 되어 있는 곳)을 기재하십시오. ※ 해외주주거나 도로명 검색이 안되는 보안 시설인 경우 기타(국외 등)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small>
연락처	<input type="text" value=""/> <small>※ 예 : 02-123-4567</small>
회원권 번호 (필수)	<input type="text" value="M-09-1234"/>
가액 (필수)	<input type="text" value="6,000"/> (천원) [육백만원] ①
실거래가격	<input type="text" value=""/> (천원)
형성과정	취득일자 (선택) <input type="text"/> <small>※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small>
	취득경위 (선택) <input type="text"/> <small>※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small>
	소득원 (선택) <input type="text"/> <small>※ 회원권을 취득한 자금 출처</small>
	기타 (선택) <input type="text"/> <small>※ 그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small>
비고	<input type="text"/> ②
파일첨부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input type="checkbox"/> 파일 이름 파일 크기 <div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10px 0;">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div> <small>최대 10 개 용량 제한: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nwp, hwp, 파일만 가능</small> 0 개, 0 byte 추가됨 </div>
<input type="button" value="저장"/> ③	

- ① ‘가액’은 취득가액을 입력
 - 단, 골프회원권의 경우 평가액(지방세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기재
 - *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 이택스(ETAX) 또는 회원권 소재지 지자체에 문의
- ② 콘도미니엄은 부동산으로登記되어 있어도 회원권 항목에 등록하고 ‘비고’란에 면적 기재
- ③ 모든 작업 완료 후 **저장** 클릭

□ 지식재산권 입력방법

신규재산		
소유자 (필수)	배우자-배우자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양도 등으로 변동된 경우 또는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	
종류 (필수)	특허권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을 선택하십시오.	
권리의 명세 (필수)	후대권화케이스 ※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으십시오.	
소득금액 (필수)	10,000 (천원) [일천만 원] ※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생긴 연간소득금액을 적으십시오. ①	
형성과정	취득일자 (선택)	<input type="text"/> ※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취득경위 (선택)	<input type="text"/> ※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소득원 (선택)	<input type="text"/> ※ 지식재산권을 취득함 자금 출처
	기타 (선택)	<input type="text"/>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비고	<input type="text"/> ※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적으십시오.	
파일첨부	<input type="checkbox"/> 파일 이름 파일 크기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이곳을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div> <p style="font-size: small;">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tif,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hwp, .hwpax 파일만 가능 0 개, 0 byte 추가됨</p> <p style="font-size: small;">파일추가 파일삭제</p>	
<input type="button" value="저장"/> ② <input type="button" value="작성취소"/>		

- ① ‘소득금액’은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생긴 연간소득금액을 입력
- ② 모든 작업 완료 후 **저장** 클릭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입력방법

신규재산	
출자자 (필수)	모-모친
회사명 (필수)	코리아전력
소재지 (필수)	도로명 주소찾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1길 5 - 동 호 (삼성동 , 씨에이치엠빌딩)
대표자 (필수)	이대표
영업종류 (필수)	전기회사
설립일 (필수)	2011-05-02
자본금 (필수)	400,000 (천원) (사역)원
출자지분 (필수)	3 (%) ※ 변동된 출자가액과 자본금에 대한 그 지분비율의 증감사항을 적으십시오.
출자가액 (필수)	12,000 (천원) (일십이백만)원 ① ※ 변동된 출자금액의 증감사항을 적으십시오.
회사연간매출액 (필수)	1,800,000 (천원) (일십팔억)원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적으십시오.
② 형성과정	취득일자 (필수) ※ 출자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제일 등
	취득경위 (필수) ※ 회사의 관계, 출자목적 등
	소득원 (필수) ※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출자지분의 자금 출처
	기타 ※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비고	※ 출자지분의 증감변동원인 행위사유와 자금출처 및 사용처를 기재하십시오.
파일첨부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input type="checkbox"/> 파일 이름 파일 크기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dashed #ccc; height: 40px; margin: 5px 0;"> 이곳을 클릭하면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div> <p style="font-size: 8px; margin: 0;">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gif, jpeg, png, bmp, pdf, zip, hwp, hwpss; 파일당 가능 0 개, 0 byte 추가됨</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파일추가 파일삭제 </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5px;">저장</div> ③	

- 「상법」상 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체에 대한 출자지분은 등록대상이 아니며, 사업으로 인해 등록대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예금, 증권, 채권, 채무, 부동산 등의 보유 형태에 따라 해당 항목에 등록
- ① ‘출자지분’은 총자본금에 대한 그 지분비율을 입력하고, ‘출자가액’은 출자한 금액을 입력
- ② 공개자는 형성과정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항목이 필수사항이며, 비공개자는 형성과정 항목이 선택사항임
- ③ 모든 작업 완료 후 **저장** 클릭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입력방법

신규재산	
출연자 (필수)	배우자-배우자 ※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그 밖에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출연재산 (필수)	20,000 (천원) (이천만)원 ※ 변동된 출연재산의 명세를 적으십시오. ①
보유직위 (필수)	이사 ※ 등록의무자가 비영리법인에서 보유하는 직위와 담당 직무를 적으십시오. ②
법인명칭 (필수)	아나바다
소재지 (필수)	도로명 <input type="text"/> 주소찾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15 - 동 <input type="text"/> 호 (인사동, 성보빌딩) ※ 해외거주자나 도로명 검색이 안되는 보안 시설인 경우 기타(국외 등)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필수)	박대표
목적사업 (필수)	환경살리기 x
영성과정	취득일자 (선택) <input type="text"/> ※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취득경위 (선택) <input type="text"/> ※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소득원 (선택) <input type="text"/> ※출연재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
	기타 (선택) <input type="text"/> ※ 그 밖에 영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비고	<input type="text"/> ※ 출자일자 경위 등 변동 사유와 자금출처 및 사용처를 기재하십시오.
파일첨부	<input type="checkbox"/> 파일 이름 <input type="text"/> 파일 크기 <input type="text"/> <div style="text-align: center;">  이곳에 더블클릭 또는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div> 최대 10 개 용량 무제한 tif,jpg,jpeg,pif,png,bmp,pdf,zip,hwp,hwpix 파일만 가능 0 개, 0 byte 추가됨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추가"/>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삭제"/>
<input type="button" value="저장"/> ③ <input type="button" value="작성취소"/>	

- ① ‘출연재산’은 출연금액 또는 출연재산 입력
- ② ‘보유직위’는 등록의무자가 비영리법인에서 보유하는 직위와 담당직무 입력
- ③ 모든 작업 완료 후 **저장** 클릭

□ 신고내역검증

☞ , 재산신고 , 신고내역검증

총괄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래 모든 사항을 확인하시고, 이상 없을 경우 **다음**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 페이지 내용을 출력하시고자 할 경우 인터넷 브라우저 메뉴 중 「파일」 인쇄 미리보기,에서 「페이지에 맞게 축소」를 선택하여 화면조절 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친족별 동의·신고금액 현황입니다.

관계	성명	정보제공 동의현황		현재가액(천원)	비고
		부동산	금융		
본인	홍길동	동의	동의	533,082	
배우자	이배우	동의	동의	293,754	
부	부친	동의	동의	577,596	
모	모친	동의	동의	33,884	
장남	김장남	동의	동의	0	

▲ 제공된 부동산·금융정보 중 누락 또는 중복 신고된 항목이 있나요?

※ 부동산의 경우 전세권, 분양권 등 회신되지 않는 항목과 금융의 경우 0원으로 신고된 항목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재산항목	신고내용	회신내용	조회	열람일시	활용입력일시
부동산	토지	4 건	0 건	1 <input type="button" value="확인"/>	2021-01-08 16:26:04	
	건물	6 건	0 건	<input type="button" value="확인"/>	2021-01-08 16:14:14	
금융	예금/보험	12 건(64,493천원)	9 건(106,255천원)	<input type="button" value="확인"/>	2021-01-08 16:41:14	2021-01-11 09:34:51
	증권	4 건(25,144천원)	3 건(7,344천원)	<input type="button" value="확인"/>	2021-01-08 16:41:14	2021-01-11 09:34:51
	채무	5 건(237,931천원)	2 건(17,794천원)	<input type="button" value="확인"/>	2021-01-08 16:41:14	2021-01-11 09:34:51

▲ 본인 및 친족이 거주중인 건물을 신고 했나요?

※ 아래 주소지가 총괄표(건물)에 신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록대상 재산인 경우 건물재산(소유권, 전세권)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상 재산이 아닌 경우(관사, 기숙사, 친척집 등) 친족사항의 거주형태란에 거주형태를 정확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거주형태	관계	성명	변동사유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69번지 대명강변타운아파트 1동 101호	자가	본인	홍길동	

▲ 타인에게 임대중인 건물이 있나요?

※ 아래 주소지가 채무항목 건물임대채무로 신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유중인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 보증금이 있는 경우 이를 채무항목에 건물임대채무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상임대나 공실, 본인 사용 등인 경우 해당 건물의 비고, 변동사유란에 '○○○에게 무상임대', '공실', '본인사무실' 등 사실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성명	권리종류	주소	변동사유
본인	홍길동	소유권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855번지 도렘마을9단지 9동 909호	
배우자	이배우	소유권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26번지 개나리아파트 101동 101호	가액변동 없음

▲ 혹시,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에 해당되나요?

※ 공개자등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등)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계	성명	재산항목	가액(천원)
본인	홍길동	신한금융투자(주), 공격건설(현보유량: 500주), 특기사항(가액변동)	16,540
배우자	이배우	윤리물산(현보유량: 400주), 특기사항(가액변동)	14,240
계			30,780

이전 다음

- 신고한 내용을 시스템 상에서 비교하여 내용을 사전 점검하는 기능

※ 신고내역검증 화면은 단순착오 및 실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으로 점검한 내용으로 등록의무자가 반드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시 다음 단계로 이동

▲ 제공된 부동산·금융정보 중 누락 또는 중복 신고된 항목이 있나요?

- 신고한 내용과 회신 받은 내용을 비교하여 부동산은 건수, 금융은 건수와 총액을 비교하여 차이 날 경우 붉은색으로 표시함
- 부동산, 금융정보의 열람일시가 나타나며, 금융의 경우 활용입력 일시도 나타남
 - ※ 열람 또는 활용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 공란으로 나타남
- ① **확인**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신고자료와 조회자료 목록을 비교할 수 있음

재산항목 열람 - 예금/보험

○ 신고자료 목록 (6건)

상태	관계	권리자	재산항목	가액
신규	본인	홍길동	국민은행 (457615-01-333333)	5,000
신규	본인	홍길동	신한은행 (110-345-1661313)	6,480
신규	본인	홍길동	우리은행(국내) (1002-135-111111)	22,100
신규	배우자	배우자	엔에이치농협증권(주) (234-409-135435)	1,500
신규	배우자	배우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3-4943512)	24,000
신규	부	부친	국민은행 (431564-02-6134812)	13,000

○ 조회자료 목록 (6건)

(단위:천원)

소유자성명	금융기관명(계좌번호)	예금(상품)종류	예금잔액	계좌개설일
홍길*	국민은행(457615-01-333333)	연금보험	5,000	2007-10-03
홍길*	신한은행(110-345-1661313)	롤러버암치료	6,480	2011-01-01
홍길*	우리은행(국내)(1002-135-111111)	우리스마트적금	22,100	2015-04-23
배우*	엔에이치농협증권(주)(234-409-135435)	CMA	1,500	2006-05-08
배우*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13-4943512)	암클러스종신보험	24,000	2011-12-01
부친*	국민은행(431564-02-6134812)	청약저축	13,000	2009-02-18

닫기

▲ 본인 및 친족이 거주중인 건물을 신고 했나요?

- 본인 또는 친족입력 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로 입력했으나 ‘건물’에 소유권 또는 전세권 등이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나타남
 - 누락이 맞는 경우 ‘건물’로 이동하여 추가하고, 관사·기숙사·친척집 거주, 보증금 없는 월세 등일 경우 추가하지 않고 다음으로 진행
- 거주지 주소체계(도로명주소)와 소재지 주소체계(지번주소)의 법정동, 행정동 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이상 없을 시 다음으로 진행

▲ 타인에게 임대중인 건물이 있나요?

- ‘건물’에 신고된 항목 중 등록의무자 또는 친족이 거주하는 주소가 아니며, ‘채무’ 항목의 ‘건물임대채무’도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 나타남
 - 해당 건물을 임대중인 경우에는 ‘채무’로 이동하여 추가하고, 해당 건물이 공실이거나 무상임대, 본인 사용 등인 경우 ‘건물’에서 해당건물의 ‘비고’란에 사실관계 기재
- 거주지 주소체계(도로명주소)와 소재지 주소체계(지번주소)의 법정동, 행정동 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이상 없을 시 다음으로 진행

▲ 혹시,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에 해당되나요?

- 재산 공개대상자 및 기획재정부 금융 관련 부서, 금융위원회 4급 이상 등 주식백지신탁 대상자만 해당하며,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보유한株式이 3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株式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

2-6. 공개목록 작성(재산공개대상자에 한함)

STEP.01 본인정보	STEP.02 친족정보	STEP.03 총괄표작성	STEP.04 공개목록작성	STEP.05 신고서제출
-----------------	-----------------	------------------	---------------------------	------------------

📌, 재산신고 · 공개목록작성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21.11.02."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공개목록에 작성된 내용은 관보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재산의 누락·오기 등이 있는 경우 총괄표에서 수정, 보완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비교란에 개인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총괄표작성으로 이동하여 수정·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비교란은 수정가능)

공개목록작성 출력 (단위: 천원)

소속	인사혁신처	직위	성명	홍길동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토지 (소개)					16,300
모	건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1-1번지 500.00㎡		12,500	
모	건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1-2번지 100.00㎡		3,800	
▶ 건물 (소개)					620,000
본인	아파트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도담마을9단지 건물 84.00㎡ 중 42.00㎡		250,000	
배우자	아파트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도담마을9단지 건물 84.00㎡ 중 42.00㎡		250,000	
모	단독주택	건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월평리 대지 300.00㎡ 건물 99.00㎡		12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소개)					27,880
본인	자동차	2015년식 제네시스 배기량(2,359cc)		27,600	

이전
저장
다음

- 공개목록 작성 중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내용이 다른 경우는 총괄표로 이동하여 해당 항목을 수정 후 공개목록 다시 작성
- 참고할 사항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비고'란 직접 작성
 - ※ 공개목록은 관보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는 내용이므로 개인정보(아파트 동·호수, 차량등록번호, 사인간 채권·채무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
- 공개목록은 자동으로 생성되며 재산항목 중 채무만 전체 합계에서 '-' 처리됨
- 최종적으로 공개목록사항이 맞는지 확인한 후 다음 클릭

2-7. 신고서 제출

STEP.01 본인정보 > STEP.02 친족정보 > STEP.03 총괄표작성 > STEP.04 공개목록작성 > **STEP.05 신고서제출**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신고서 제출하기**

최초 재산등록의무자로 재산신고서 작성을 완료하셨습니다.


 재산을 잘못 신고하거나 기타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정계의결 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처분이 가능하오니 제출 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신고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재산등록신고서	본인 보관용 신고서 출력	출력
공개목록	관보(공보)에 게재되어 공개되는 내용 출력	출력

※ 출력 에서 PDF 인쇄가 안될 경우 조치방법 안내

신고서 수정 제출기한내에는 별다른 절차없이 신고내용을 수정 후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일 내에 **신고서 제출하기** 를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완료
- ① '재산등록신고서'와 '공개목록'을 출력하여 재산 신고사항 최종 확인
- ②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하여 신고서 제출 후 필요 시 접수증 출력
 - 접수증은 출력 없이 제출 가능하며, 제출 후에도 신고서 조회에서 출력 가능

3 신고서 제출 후 조회·수정

3-1. 제출신고서 조회

PETI 공직윤리시스템 마이페이지 재산신고 주식백지신탁 취업심사 게시판

마이페이지 마이페이지 > 제출신고서 조회

번호	신고서	신고구분	등록기준일	소속	직급	직위	신고일자	상세보기	접수증출력
2	변동	정기변동	2019-12-31	인사혁신처	4급	과장	2020-02-25	🔍	🖨️
1	최초	신규	2019-09-01	인사혁신처	4급	과장	2019-10-21	🔍	🖨️

- 마이페이지
- 신고서조회 ①
- 제출신고서조회
- 재산변동요약서조회
- 공개목록조회
- 연도별변동흐름조회
- 소명서관리
- 보완신고서 관리

- ① [마이페이지] → [신고서조회] → [제출신고서 조회]에서 제출 완료한 신고서 상세 보기 가능
 - 과거에 제출한 모든 신고서 조회 가능

3-2. 신고서 수정

홍길동님 환영합니다.

- > 소속 : 인사혁신처
- 윤리복무국
- > 신고서 진행상황 : 제출완료
- > 등록기준일 : 2019.01.01.
- > 제출마감일 : 2019.02.28.

최초재산등록신고서(신고) **신고서수정** ①

- > 재산을 잘못 신고하거나 기타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징계의결 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처분이 가능하오니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홍길동님 환영합니다.

- > 소속 : 인사혁신처
- 윤리복무국
- > 신고서 진행상황 : 제출완료
- > 등록기준일 : 2019.01.01.
- > 제출마감일 : 2019.02.28.

최초재산등록신고서(신고) **신고서수정요청** ②

- > 재산을 잘못 신고하거나 기타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징계의결 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처분이 가능하오니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신고기간 내 제출한 신고서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 **신고서수정** 클릭하여 바로 수정 가능
- ② 신고기간 이후 10일 이내에 신고서 수정을 원할 경우 **신고서수정요청** 클릭하여 요청한 후 소속기관 윤리업무 담당자의 승인받아 수정 가능
- 수정승인 후 신고서를 수정한 등록의무자는 반드시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신고서가 최종 제출로 처리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4**

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

발 행 일 2022년 6월

발 행 처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재산심사기획과

TEL : 044-201-8467

FAX : 044-201-8136

인 쇄 처 제일기획 TEL : 044-866-2181

※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